

국내입법의견조사 94-2

인공수정의 법적규율

1994. 5.

연구책임자 이준우 (수석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목 차

제 1 편 인공수정의 법적규율

I. 문제의 소재	7
II. 각계 입법의견	10
1. 인공수정 관련 입법의 필요	10
2. 인공수정의 요건의 제한	14
3. 〈인공수정자의 보호문제〉 - 인공수정자의 가족법상의 지위	19
4. 〈〈 배아보호법 관련 〉〉 - 인간 배자복제 관련	23
5. 대리모 문제	28
6. 인공수정에 관한 문제의 합헌성 여부	30
7. 관련 문제	31
III. 입법방향	34
1. 각계의견의 검토	34
2. 입법방향	39
〈참고자료〉	43
I. 대한의학협회 제정 『인공수태 윤리에 관한 선언』	43
〈인공수태윤리에 관한 선언〉	43
〈비배우자 인공수정시술지침〉	43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시술지침〉	45
〈인공수태시술 의료기관의 요건〉	46

Ⅱ. 인공적 임신에 관한 법(시안 : 고정명교수)	48
Ⅲ. 完全養子法(案)	50
Ⅳ. 입법례	51

제 2 편 최근입법의견 동향 및 최신법령 소개

Ⅰ. 1994년 정부입법예정 149개 법안중관련 입법의견	59
1. 1994년 정부입법예정 149개 법안중관련 입법의견목록	59
2. 1994년 정부입법예정 149개 법안중관련 입법의견요지	61
Ⅱ. 최근입법의견 동향	71
1. 최근입법의견 목록	72
2. 최근입법의견 요지	76
Ⅲ. 주요입법예고법률안	118
1. 주요입법예고법률안목록	118
2. 주요입법예고법률안내용	119
Ⅳ. 최신법령 목록	123

제 1 편

인공수정의 법적규율

I. 문제의 소재

생명체의 형질, 기능, 형태 등을 결정해 주는 유전인자를 인공적으로 조작하여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거나 또는 개조하는 기술인 유전공학은 앞으로 더욱 발전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인공수정¹⁾은 인간에 의하여 더 많이 이용되어 시간이 감에 따라서 남녀간의 자연적인 성행위가 아닌 인공수정에 의해 출생한 자는 더 많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현행법을 살펴보면, 인공수정자에게 적용될 직접적인 법규정은 없다. 그렇다고 법의 공백기를 언제까지나 방치할 수는 없다. 즉 인공수정에 관한 문제를 예상하지 못하고 제정한 현행법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법의 공백으로 말미암아 인공수정자 문제에 관해서 계속해서 법적용상 어려움을 겪고 또 실질적으로 사법부에게 입법권을 떠맡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는 없다.

인공수정에 의한 자녀의 출산은 어느 한 불임부부에게 자녀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준다는 긍정적인 뜻 이외에 부수적으로 생기게 되는 문제가 너무 많다. 또한 출생한 자녀의 복리문제와 관련하여서도 심각성을 띠고 있다.

인공수정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 윤리적, 법적 문제가 내포된 사안이기 때문에 종교적 입장, 사회학적 내지 인류학적 입장 및 법학적 입장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입장이 다양한만큼 합일점을 찾기도 쉽지 않은 문제로 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지 여부의 위헌성문제, 우생학적인 인

1) 인공수정(Artificial Insemination)이란 남녀간의 자연적인 성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인공적인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여성의 수태를 가능하게 하는 모든 의학적 방법(: Lori B. Andrews, *New Conceptions*, St. Martin Press, 1984, p.159; Manfred Harder, "Wer sind Vater und Mutter: Familienrechtliche Problem der Fortpflanzungsmedizin", *Juristische Schulung*, 26. Jahrgang Juli 1986, Heft S.506; 高貞明, 「人工受精과 親子法」, 법무부, 인공수정의 법리, 1987, 194면)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부부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고 혼인과 관계없이 자녀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여타의 남녀관계까지도 포함한다. 체내수정과 체외수정은 물론 대리모에 의한 임신도 모두 포함하는 인위적 내지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한 모든 형태의 임신을 총칭하는 인공적 임신(Artificial Conception)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공수정, 정액제공자와 난자제공자를 익명으로 하는 문제, 잉여수정란의 처리문제, 대리모문제, 독신여성에 대한 인공수정, 수정란의 실험, 복제인간의 탄생과 인간·동물간의 잡종출산 등의 관련된 문제가 증첩되어 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인공수정자의 법적 지위와 인공수정의 각단계별로의 합리적 규율이다. 이를 중심으로 하여 위의 여러 가지 관련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라고 일단 정리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내용과 형식의 입법조치가 행하여져야 할 것인가가 현안의 과제라고 하겠다. 인공수정의 법적 문제를 범영역으로 나누면, 헌법적 차원의 위헌성 문제, 친자법을 중심으로 한 민사법상의 문제, 의료법을 중심으로 한 행정법의 영역문제, 그리고 형법적인 예방과 처벌의 문제로 될 것이다.

이제 인공수정의 문제는 종교적, 윤리적 차원을 떠나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입법적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현재의 당면과제이고 본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인공수정과 관련한 각계의 입법의견을 다음과 같은 쟁점으로 나누어 정리·검토하고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인공수정에 관한 입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i)인공수정에 관한 입법의 필요성, ii)인공수정의 시술과 관련하여 그 요건의 제한, iii)인공수정자의 보호문제로서 인공수정자의 가족법상의 지위, iv)배아보호법의 제정여부, v)대리모 문제, vi)인공수정에 관한 쟁점의 합헌성 문제, vii)인공수정과 관련된 그 밖의 문제로 대별하여 살피고자 한다.

첫째, 인공수정에 관한 입법의 필요성은 현실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인공수정의 실태와 법적 규율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이를 특별법으로 규제할 것인가 아니면 의사의 윤리선언과 같은 윤리적, 기술적 관리로서 문제점을 해결하여도 충분한 것인가 하는 입법에 대한 태도의 문제이다. 인공수정과 관련한 입법적 단계로서는 윤리적 단계, 행정법상의 절차적, 의료행정상의 규제 단계, 인공수정법으로서의 특별법 단계, 형법상의 처벌단계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의 우리나라 현실에 있어서 어떠한 입법적 태도를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둘째, 인공수정의 시술과 관련하여 그 요건의 제한문제는 주로 인공수정을 실질적으로 행하는 경우 그 단계별로 발생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AID의 경우 夫의 동의, 피수정자의 허용범위로서 독신여성의 인공수정문제 등, 인공수정의 시술자 내지 시술기관의 제한문제, 시술여부의 결정에 관한 문제, 정자제공회수의 제한문제, 인공수정과 관련한 비밀의 유지와 인공수정자의 알 권리 인정문제 등으로 세분된다.

셋째, 인공수정자의 보호문제로서 인공수정자의 가족법상 지위에 관한 문제는, 인공수정자가 인공수정을 의뢰한 부부의 친생자로 추정되는가 하는 문제와 夫의否認權 행사를 인정할 것인가 아닌가, 그리고 인정한다면 그 경우에 있어서 인공수정자의 친자법상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로 요약된다. 이는 친자법 전반에 걸쳐 복잡한 논점을 낳을 수 있으나, 친자법상의 친생추정 내지 친자관계의 존부, 이혼시의 양육책임 등 인공수정자에 직결된 문제로 한정한다.

넷째, 배아보호법의 제정여부는 유전자조작으로 대표되는 생명공학이 인간 배자를 복제하는 수준으로 발달함에 따라 인간배자의 복제 허용여부와 인간의 수정란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요약된다.

다섯째, 대리모 문제는 인공수정의 특수한 형태인데, 법적 허용여부와 관계자의 법적 책임과 의무가 중점이 된다.

여섯째, 인공수정에 관한 쟁점의 합헌성 문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등과 관련하여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가치와 이념을 위반하는 면이 없지 않다. 인공수정법과 같은 특별법의 제정은 우선 인공수정의 합헌성 문제를 선결로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점에서 인공수정 시술과 연구과정에서 학문의 자유가, 우생학적인 목적의 인공수정의 경우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의 충돌 문제가 논점으로 된다.

일곱째, 인공수정과 관련된 그 밖의 문제로서는 정자와 난자의 법적 지위, 수정란의 법적 지위, 체외수정 시술계약에 있어서의 절차적, 내용적 규제문제, 수정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인정문제, 냉동정액보존과 인공수정의 문제, 잉여 수정란의 처리문제 등이 있다.

이상의 쟁점을 중심으로 하여 각계의 입법의견을 살펴 본 다음, 이를 검토 분석하고 입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각국의 입법례와 참고 자료 및 試案은 말미의 참고자료로 정리한다.

Ⅱ. 각계 입법의견

1. 인공수정 관련 입법의 필요

○ 보사부

- 정자은행을 운영하거나 보관된 정자를 불임여성에게 나누어 주는 행위자체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데다 세계적으로 관행화되어 있어 행위 자체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의료진의 비윤리적인 의료행위가 드러나면 의료법위반등의 혐의로 면허취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서울 93. 1.21 23면).
- 현행 의료법 및 시행령에는 인공수정과 관련한 명문규정은 없지만 의료기관과 의사의 비윤리적인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처벌규정이 있다. 앞으로 산부인과협회의 「인공수정에 관한 윤리강령」이 엄격히 준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아갈 방침이나 현재로서는 관련법을 정비할 계획은 없다(동아 93. 1.21.,22면).

○ 대한불임학회

인공수정시술이 대학부속병원뿐만 아니라 개인의원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학회안에 소위원회를 구성, 인공수정을 합리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동아 93. 1.21.,22면).

○ 대한의학협회

93년 5월 6일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의 적용증,공여자 기준, 시술기관 및 의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인공수태 시술지침」을 발표

- 비배우자 인공수정에 관한 사항: ①남성이 무정자증,희소정자증,유전적 질환,사정기능장애로 인한 남성결함 등 6개항의 적용증에 해당하는 불임남성에 한하여 남편과의 합의하에 실시하도록 함. ② 시술대상 부모는 비배우자 인공수정으로 태어나는 신생아를 양육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③신생아의 부모로서

법적,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 ④인공수정의 정액제공자는 간염, 매독, AIDS 등의 질환이 없는 건강한 젊은 남성으로 신분은 비밀에 부쳐지며, ⑤인공수정 결과의 공개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함.

- 시술기관 및 의사에 관한 사항: ①정액공여자의 혈액형, 신체적 특성, 정액검사 소견, 병력, 질병검사 결과를 비치해야 하고, ②한 명의 정액을 임신에 10회 이상 상용할 수 없도록 함.

-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에 관한 사항: ①체외수정 및 배아이식방법으로만 임신이 가능한 경우와 다른 임신방법이 계속 실패한 경우에 한해 부부간 협의를 거친 후 실시하도록 적용증과 조건을 명시, ②시술의사는 산부인과학, 생식생리학, 발생학 등 관련영역의 의학지식과 기술을 익힌 자로서 시술에 필요한 충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곳에서 시행해야 한다. ③유전자 조작을 금지하여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도록 규정(한국 93. 5. 7., 2면).

○ 맹광호(가톨릭의대 교수)

과학·의학발전에 따른 급격한 인구증가와 환경오염, 생명체 조작기술 등에 대하여 심각한 윤리적 타락상을 지적하며, 특히 낙태와 인공수정·피임·태아감별 등은 인간의 존엄성 차원에서 제도적 제어장치가 필요하며, 유전자를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고도의 도덕성으로 무장되어야 한다(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주최, 과학기술과 가톨릭 세미나 주제발표문 「생명의학기술의 발달과 그리스도교윤리」, 93. 7.24).

○ 고정명(국민대 법학과 교수)

인간의 존엄성에 비추어 정자·난자이용과 대리모 임신에 관한 찬반 양론이 분분한 만큼 우선 시행기준 등을 제정, 인공수정기술에 대한 정부의 감독이라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①인공수정 시술기관 감독을 위한 의사윤리위원회 설치, ②정자제공자의 신체이상유무 검사, ③무분별한 정차채취와 동일인의 정자활용 횟수 제한, ④피시술자의 신상기록 및 비밀유지, ⑤인공수정시술병원, 의료인자격 제한, ⑥정자 등의 안전관리 및 보관, ⑦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자의 법적지위 규정 등이 하루 빨리 검토되어야 한다(한국 93. 1.26., 22면).

○ 곽동헌(경북대 법대교수)

인공수정이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도 비공개리에 널리 보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고, 또 사실상으로나 법률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예견되는 이상, 국가가 인공수정을 허용하건 아니하건 간에 일단 어느 정도의 법적 조치는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된다. 인공수정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나 혹은 일절 불허하는 경우라도 암암리에 진행되는 인공수정의 폐단을 결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은 서구와 같은 허용책이 아니라, 일체의 금지에도 나타나는 인공수정에 대해 청산적 기능을 갖는 법이어야 하겠다(「인공수정에 대한 견해」, 민법학의 현대적 과제, 1987, 822면).

○ 권태호(법무연수원 검사)

깨끗한 정자를 채취·보관해야 하는 것은 의료인의 기본적 의무이다. 인간 생명의 근원인 정자와 난자의 매매행위와 무분별한 인공수정시술을 규제하는 내용의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우선 인공수정 시술기관 등의 허가과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보사부에 관련 위원회의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체의수정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91년, 청주대 박사학위논문).

○ 김주수(연세대 법학과 교수)

의료기관에서 자체 제정한 윤리강령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권고사항일뿐 실효성이 없다. 지금이라도 무분별한 인공수정시술을 규제하는 입법을 통하여 정자 매매행위, 감염된 정자에 의한 기형아출산 등의 부작용을 미리 막아야 한다(동아 93. 1.21., 22면).

○ 김종배(건국대 동물자원연구센터 교수)

아이를 갖기 원하는 불임부부들에게 행해지는 인공수정은 불임가정의 희망일 수 있으나 인간생명에 대한 존엄성 상실, 정상적인 남녀관계의 왜곡, 부부관계의 패턴을 무너뜨리는 창조질서의 훼손이며 극단적으로 결혼무용설, 대리모 등 사회·윤리적 부작용을 가져 올 수 있으므로 시술에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국민 93.11. 1., 21면).

○ 김혜숙(이화여대 법대 강사)

친자관계의 문제 뿐만 아니라 수정란의 취급과 관련한 의사의 책임 등 민사상 형사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미 학자들간에 주장되고 있는 입법론을 구체화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다만 아직 체외수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이 시점에서는 법률제정이전의 단계로서 법학자는 물론 관심있는 의학자, 심리학자를 포함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체외수정 시술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여론의 방향을 가늠한 후 윤리적 유전공학적 토대 위에서 이제까지 발표된 시안의 검토를 바탕으로 체외수정에 대한 기본원칙을 먼저 수립한 후 특별법의 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미국과 한국에 있어서의 체외수정의 문제점」, 가족법연구 제7호, 1993, 가족법학회, 324면).

○ 장영민(인하대 법학과 교수)

행정법의 영역에서 일정한 행위를 금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벌을 가하는 방법 이후 최후의 수단으로서 형벌을 사용하되, 이를 형법에 규정하는 것이 아니면 배아보호법이나 인공수정법 등 특별법을 통해서 보호할 것인가의 선택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형법의 해석과는 달리 특별한 영역을 설정하여 '인간의 잠재적 존재'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특별법의 형태로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때 고려하여야 할 것은 이러한 행위가 앞으로는 일반인들도 이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범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생명공학의 형법적 한계」, 형사정책연구 제4권 제4호, 1993·겨울호, 29쪽).

○ 서울신문 사설

「과학은 신성한 생명의 과정에 관여할 권리가 없으며, 과학은 가치있게 여겨지는 인간적 특징을 조장하고 해로운 특징을 제거시킬 수 있는 권리는 지닌다」는 것이 현재의 윤리적 기준일 따름이다. 이 원칙에서도 인공수정은 특히 선택하기 어려운 윤리적 딜레마를 안고 있다. 수정과정의 잘못을 다시 임신중절로 교정할 수 있는가, 기형아의 탄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도한 시술비로 소수사람들에게만 기회를 주게 되는 결과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제공자와 시술자의 프라이버시는 과연 얼마나 완전히 보장될 수 있는가라는 쟁점들은 여전히 미결사항

으로 남아 있다.

이번 계기에 우리는 법적제도나마 시도해 보아야 할 것이다. 채취된 정자·난자의 매매금지, 성구분 출산의 금지, 인위적인 유전자조작의 금지 등은 특히 인공수정법을 이미 만든 스웨덴·독일·미국 등이 강조하고 있는 항목들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선 시술기관의 감독기능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의료 스스로 최소한의 윤리를 지키는 태도마저 지금은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서울 93. 1. 22., 3면).

○ 조선일보 사설

인공수정은 귀중한 생명의 탄생을 다루는 작업인 만큼 단순히 영업의 차원에서 적당히 다룰 일이 아니다, 적어도 의료기관이라면 아무 정자나 구해다가 시술하는 식의 무책임한 행위는 삼가야 한다.

관계당국은 불임부부들 사이에 거의 보편화되다시피 한 인공수정이 비윤리적 차원에서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면 한다. 이번에 드러난 인공수정의 실태를 볼 때 이를 자율 규제에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각국의 추세가 법적으로 규제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기도 하다. 생명의 씨가 아무런 규제없이 장기간 암거래되다시피 해왔다는 사실은 문명사회로서 실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조선 93.1.22., 2면).

* 입법례

스웨덴: 인공수정법(85), 독일: 체외수정란보호법(90), 미국: 통일친자법(73), 각주의 인공수정법, 영국: 수태 및 수정란보호법(90), 대리모조정법(85), 체코: 가족법(82), 프랑스: 인간개조금지법안(94.1.상원통과)

2. 인공수정의 요건의 제한

1) 夫의 동의

○ 이강희(한남대 법과 교수)

부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인공수정자로 하여금 부의 친생자의 지위를 취득하게 하고 부는 친생부인을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인공수정자의 친자법상 지

위」, 사법행정 1984년 9월호, 64면).

○ 고정명(국민대 법학과 교수)

현실적으로 볼 때 부가 원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처가 임의로 제3자의 정자에 의한 인공수정자를 출산하는 것은 가정의 평화유지는 물론 출산 후 인공수정자의 복리를 위하여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 인공수정에 있어서 부의 동의는 가족이라는 소박한 감정보존에서도 결여될 수 없는 조건으로 그 필수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체외수정의 법적 소고」, 국민대 법학논총 제5집, 1992, 11면).

* 입법례:

- 스웨덴 친자법 제1장 제6조 본문: 부의 동의를 얻어서 출생한 AID子를 그 동의한 부의 자로 간주한다. 인공수정법 제2조: 부 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시술요건으로 하고 있음.
- 미국 통일친자법 제5조: 부의 동의를 인공수정의 필수요건으로 함은 물론 그 동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반드시 부부 양인의 서명을 요구하고 있음.
- Georgia州法: 부부가 서면으로 동의한 인공수정시술을 행한 의사가 부부의 서면동의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사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한 민사책임이 부과되지 않음.
- 체코, 헝가리, 불가리아: 夫의 서면 동의를 요함.

2) 피수정자의 허용범위- 독신여성의 인공수정문제 등

○ 고정명(국민대 법학과 교수)

인공수정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자로 하여금 부모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 미혼녀나 이혼녀가 인공수정에 의하여 출산하는 것은 금지함이 마땅하다(전계 논문, 11면).

- 夫가 사망한 후 그 처가 냉동보존하고 있던 부의 정자를 인공수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 양수산(한국외국어대 법과 교수)

자와 모의 이익이 서로 상반될 때에는 자의 이익을 우선시키는 것이 합헌성을

유지하는 길이 된다. 독신여성이 인공수정자를 출산하는 것은 위헌적인 행위임이 분명하다(전개논문 261면).

○ 이강희(한남대 법과 교수)

- 독신여성이 인공수정에 의해 자를 출산하는 것은 혼인제도로부터의 해방 내지는 부의 우월적 지위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하는 점에서 일종의 여권신장의 한 표현이라 볼 수 있으므로 긍정해야 한다(「인공수정자의 친자법상의 지위(하)」, 사법행정 제286호, 1984.10월호, 72면).
- Donor는 부모로서의 책임의식이 전혀 없어 부자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미혼모와의 관계는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부자관계 인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인공수정자의 친자법상 지위(하)」, 사법행정 84년 10월호, 73-74면).

* 입법례:

- 미국의 여러 주법이나 통일친자법(Georgia Code Ann.74 - 101. 1(a), 통일친자법 제5조 a)에서는 피수정자의 범위를 혼인중의 처에 한정하고 있고, 설혹 출생이 혼인종료 후라 할지라도 혼인 후 통상적인 수태기간내인 경우에는 무방한 것으로 하고 있다.
- 스웨덴 친자법(제1장 제6조)과 스웨덴 인공수정법(제2조)은 피수정자의 범위를 혼인중의 부의 배우자에 한정하고 있고, 미혼녀나 이혼녀의 인공수정은 허용하고 있지 않다.
- 독일 체외수정란보호법((Embryonenschutzgesetz(E Sch G) vom 13. 12,1990)은 법률적 부부에 한함.
- 영국 수태및수정란보호법(Human Fertilization and Embryology Act, 1990): 인공수정자의 복지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산모의 나이 제한 없음.
- 체코가족법(1982) 제58조2항, 및 인공출산기술지침: 35세 이하의 여성, 정자 제공자는 40세 이하일 것.
- 프랑스 인간개조금지법안(94.1.21 상원 통과): 결혼했거나 2년이상 동거한 가임기의 생존남녀.

3) 인공수정의 시술자 내지 시술기관

○ 고정명(국민대 법학과 교수)

인공수정의 시술은 일정한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면허를 가진 의사에 의해서만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시술자의 기술적 요건은 물론이지만 이의 인격적 요건은 더 중요하다 할 것이므로 현단계의 우리의 실정에서는 사회문화적 전통과의 관계에서 자의 이익과 인권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시술기관을 심사,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 입법례

- Georgia州法(74-101.1), 미국 통일친자법 제5조: 자격을 갖춘 의사에 의하여 시술될 것을 규정.
- 스웨덴 인공수정법 제3조 1항: 반드시 산부인과전문의의 감독하에 국·공립병원에서만 인공수정시술을 실시할 수 있다.
- 독일 체외수정란보호법: 지정된 국·공립병원 등에서만 시술.

4) 시술여부의 결정

○ 고정명(국민대 법학과 교수)

의사는 당해 부부의 가정적 신체적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인공수정시술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고 그 시술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비배우자간의 시술여부는 보사부장관하의 의사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인공출산의 법리와 실제, 교문사, 1991, 224면).

* 입법례

- 스웨덴 인공수정법 제3조 2항: 인공수정 시술책임 담당의사는 시술에 앞서 피시술자 부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 및 생활환경을 조사하여 피시술자에게 인공수정시술을 하는 것이 상당한 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만약 인공수정 시술담당 책임의사에 의하여 그 인공수정 시술을 거부당한 경우에는 피시술 부부는 사회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 사회청의 결정에 대하여는 누구도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영국 수태및수정란보호법: 인공수정시 태어나는 아이의 복지를 고려하여 결정.

5) 정자제공회수의 제한

○ 고정명(국민대 법학과교수)

동일한 정자제공자로부터 회수의 제한없이 정자의 제공이 허용된다면 후일 동일한 정자제공자에 의하여 출생한 자들간의 근친상간문제를 야기하게 되며 그 외에도 유전학상의 여러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 모두 10회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여야 한다(인공출산의 법리와 실제, 교문사, 1991, 224면).

* 입법례

- 프랑스 인간개조금지법안: 혼합적 결합(CAI)의 금지

6) 비밀유지와 알 권리

○ 고정명(국민대 법과교수)

의사가 인공수정에 관련된 사실을 인공수정자, 정자제공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누설함으로써 가정의 평화 및 자의 복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이를 누설한 시술담당의사는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전게서, 127면).

* 입법례

- 스웨덴 인공수정법 제3조 3항: 정자제공자의 선택결정은 인공수정 담당의사의 전권사항이지만, 정자제공자의 개인자료는 병원의 특별카드에 수록되어 7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인공수정에 의하여 출생한 자가 판단능력을 가지는 연령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그에게 병원에 보관되어 있는 정자제공자의 개인자료를 입수할 권리가 인정된다. 또한 인공수정자로부터 청구가 있을 경우 사회복지위원회는 인공수정자를 위하여 정자제공자의 개인자료의 입수에 조력할 의무가 있다.
- 조지아주, 오클라호마주 인공수정법: 의뢰부부의 동의서면은 증거자료로서 특수한 경우에만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3. <인공수정자의 보호문제> - 인공수정자의 가족법상의 지위

1) 친생자 추정 - 夫의否認權

○ 제한설: 夫의 동의하에 제3자의 정액을 사용하여 인공수정을 한 때에는 夫의 자로 추정받는 혼인중의 출생자가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동의를 법적 성질은 동의한 부와 출생된 자 사이에 친자관계의 성립을 인정한다는 의사표시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子의 출생 후 친생부인의 소(민법 제846조, 제847조)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출생된 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거의 예외없이 이와 같이 인정한다. 부인권의 행사는 신의칙에도 반하고 권리남용이 될 것이다(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1992, 276면; 한봉희, 「인공수정자의 가족법상의 지위」, 고시연구 94년 3월호, 172면; 이근식, 「인공수정자의 법률문제」, 사회과학논문 제12권, 연세대학교 사회대학연구소, 1985, 59면; 서울 家審判 1986.1.15. 85드 5884, 1983.7.15, 82 드 5110, 83 드 1266).

○ 혈연설: 부부가 혼인중에 출생한 자라 하더라도 부의 자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부의 자로 추정할 수 없다. 즉, 부가 생식불능이거나 혈액형 또는 인종적으로 볼 때 자의 적출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는 부의 친생자로 추정될 수 없다. 따라서 부의 생식불능으로 인한 AID의 인공수정자는 당연히 부의 자로서의 추정을 받지 않게 된다(이강희(한남대 법과 교수), 「인공수정자의 친자법상 지위(중)」, 사법행정, 1984. 9월호, 63면; 鄭然彧, 「인공수정과 그 법률문제 - 인공수정자의 친자법상 지위를 중심으로」, 法曹 35권 5호, 1986.5월호, 67면).

○ 친생부인권 인정설:

- 夫는 민법 제847조에 의하여 부인권 행사기간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만 한해서만 친생부인권을 상실할 뿐이지 그밖에 夫가 친생부인권을 상실하는 근거는 법률상 전혀 없다고 하겠다. 또한 AID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이 갖는 구속력을 친생부인권의 포기라고 해석하는 것은 강행성을 갖는 가족법의 원리상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자의 적출성 여부는 전적으로 부모의 합의하에 좌

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夫는 계속 친생부인권을 갖는다고 본다.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혼인외의 출생자라 하더라도 그 법적 지위가 크게 향상되어 있으므로 AID에 의한 자의 적출성이 설사 부인되더라도 자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의 복리우선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친생부인권을 행사하려는 부모부터 이러한 권리를 국가가 박탈한다고 하더라도 장래에 父로서의 의무이행을 충실히 하리라는 기대가능성은 없는 것이므로 자의 복리를 위해서라면 이러한 친생부인권을 인정하여 주는 것이 더욱 타당한 결과가 될 수 있다(양수산, 「夫의 동의하에 제3자의 정액을 인공수정하여 출생한 자의 친생부인(하)」, 사법행정, 1986.3. 70면).

- 인공수정에 관한 父의 인지권의 포기, 자의 인지청구권의 포기도 판례와 다수설의 이론과 같이 무효라고 해석된다. 더구나 인지전 사실적인 父에 의한 다액의 금전이 수수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소수설이라고 하더라도 위 포기계약이 무효라고 해석할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丙(인공수정자)이나 丁(정자제공자)이 요구하면 丙丁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가 확인될 것이고, 丙丁關係가 확인 공표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甲丁 사이는 호적의 정정여부를 불문하고 양친자관계가 존재한다 함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鄭範錫, 「親子法에 관한 問題點」, 民法學의 現代的 課題, 1987, 774면).

○ 완전양자(특별양자)제도 도입설:

- 강행법으로서의 가족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볼 때, 입법의 미비를 단순한 유추해석으로 해결하려는 방법도 비판받을 여지가 있는 것이며, 민법 제844조를 입법한 입법자의 예상을 벗어난 인공수정자의 경우까지도 이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률적용에 혼란이 가중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또한 인공수정자의 보호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민법 제844조의 적용을 인정하는 견해는 결국 일시적인 대응책에 지나지 않게 된다. 즉, 부가 동의한 AID에 의해 출생한 자의 친생자추정의 문제를 민법 제844조로써 해결하려는 그간의 태도와 이를 지지한 학설들은 새로운 입법을 연기시키거나 심지어 이를 저지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우려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 그러므로 우리 민법의 경우도 인공수정자의 법적 지위를 파악함에 있어서 프랑스의 예에서처럼 특별양자제도의 도입 내지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며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정명, 전계서 109면)

- 子の 복지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할 때에는 實親子間의 친족관계의 단절도 법적 및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혈연은 신성한 것도 아무 것도 아니며, 자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친권박탈 등 모두가 적법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일부 학설도 이해할 수가 있다. 최근의 諸外國養子法의 동향에서 보면 완전양자를 인정하는 나라는 물론,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도 실친자관계의 단절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오히려 예외적인 소수이다. 양자는 실친측(實親側)과 단절되는 이상 자로부터의 또는 자에 대한 인지의 소, 친자관계존재확인 소 등은 일절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 완전양자에 있어서 양자될 자는 입양특례법 제2조1항 1-3호에 해당하는 자 및 인공수정자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鄭熙根, 「完全養子制에 관한 考察」, 民法學의 現代的 課題, 1987, 803-804면).

○ 판례의 입장:

(1) 무제한설: 「... 부부가 사실상 이혼하여 여러 해 동안 별거생활을 하던 중에 자를 포태한 경우에도 위 추정(민법 제844조 제1항)은 번복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판 1975.7.22. 75 다 65)

(2) 제한설: 「... 민법 제844조는 부부가 동거하여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를 포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거사실의 결여로 처가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판 1983.7.12, 82므59)

(3) 독일판례 입장: 독일연방대법원은 夫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도 표현상의 父(Scheinvater)에게 동의는 부인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부인권을 인정하고 있다(NJW 1983, S.2073 ff).

(4) Donor와 자 사이에 부자관계를 인정한 판례: C.M. Plaintiff, V.C.C. Defendant, 152 N.T. Super, 160. 377A 2d 821, 1977.

2) 정액제공자와 난자제공자를 익명으로 하는 문제

○ 찬성론

- 정액제공자나 난자제공자의 성명을 공개하면, 자는 추후 자신의 혈통에 관해서 상세히 알게 됨으로서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게 되므로 자를 포함한 가족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자의 혈통이 밝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가정의 평화보호나 자의 복리를 위하여도 타당할 뿐만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예상하지 않고서 마치 헌혈행위 정도의 인식으로 정자를 제공한 제3자의 기대에도 적합하며 그의 보호를 위하여서도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 그러나 여기에 예외를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AID에 의한 모가 미혼모이거나 AID에 의한 자가 친생부인 등을 이유로 친부(AID母의 夫)와의 친자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만약 정자제공자가 원한다면 정자제공자와 AID子 사이에 친자관계를 인정함과 동시에 양육권과 양육책임을 인정하는 것도 고려할 여지가 있는 일이라 하겠다(고정명, 전게서 114-115면; Broda 오스트리아 대법원장의 제56차 독일법률가회의-1986년 9월9일- 발표의견: Klaus Schumcher, Fortplantungsmedizin und Zivilrecht, FamRZ 87, S. 319).

○ 반대론

- 익명으로 함으로써 부 아닌 제3자의 정액이나 처 아닌 제3자의 난자에 의한 인공수정을 통해 출생한 자로부터 자기의 혈통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자신의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자로부터 박탈하는 것이 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치는 것으로서 위헌적인 처사로 보지 않으면 아니 된다. 정액제공자와 난자제공자의 이력을 기록해 두도록 할 것이 요망되며, 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한 후 자의 열람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자에게 제시하도록 하는 입법조치가 뒤따라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법이 지나치게 개입을 하는 경우에는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게 됨으로써 오히려 자의 이익에도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법률상의 규정을 통해서 자로 하여금 자신의 혈통을 밝히도록 강제할 필요는 없다. 자에게 출생내력을 밝히는 문제는 현재의 부와

모로 되어 있는 부부 쌍방에게 자의 이익을 위해서 재량권을 주는 것이 상책일 것이다(양수산, 「인공수정에 관한 제문제의 합헌성 고찰」, 현대가족법과 가족정책, 삼영사, 1988, 254면).

* 입법례

- 스웨덴 인공수정법 제4조: 인공수정기술에 의하여 출생한 자가 상당한 판단력을 갖는 나이에 달한 때, 그 자는 병원에 보관되어 있는 정자제공자의 개인자료를 입수할 권리를 가진다.
- 독일: 만 16세에 달한 인공수정자는 자기의 유전학상의 부를 알 헌법상의 권리를 인정(헌법 제1조의 「인간의 존엄성 보호」에 관한 규정, 제2조의 「인격권」에 근거, 해석상 인정).
- 이스라엘: 정자은행관리규칙(Regelnuber die Administration von Samenbanken) 제2장에서 정자제공자목록과 정자목록 두 가지를 비치하도록 하는데, 정자제공자의 이름이 정자목록에 나타나지 않도록 함.

4. << 배아보호법 관련 >> - 인간 배자복제 관련

1) 인간배자의 복제 허용여부

<정 부>

○ 보사부

대한의학협회에 공문을 보내 93년 5월에 대한의학협회가 제정한 「인공수태윤리에 관한 선언」을 현실에 맞게 대폭 확대·수정하여 인간유전자 조작 등을 실질적으로 막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여, 빠른 시일안에 인간유전자 조작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유전자 조작등의 실험능력을 가진 연구기관이나 학자 등이 비윤리적 실험을 아예 못하도록 하는 실험지침을 만들어 이를 엄격히 적용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공개 점검할 수 있는 보고·감시체제를 만들도록 당부함(서울 93.11.10., 23면).

○ 조병륜(보사부 의정국장)

인간을 대상으로 유전공학적 실험을 하는 행위는 반드시 규제되어야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법제화할 경우 자칫 과학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우선은 관련 학자들이나 단체 등이 자율규제 방안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서울 93. 11.10.,23면).

〈의료계〉

○ 김일순(연세의료원 원장)

한 때 각광받던 성감별이나 시험관아기 등의 의학기술도 지금에 와서는 각종 법적·윤리적 문제를 낳고 있듯이 그 어떤 첨단의학기술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이나 자연의 섭리에 위배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인간복제는 더 이상 나아가서는 안 될 한계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한국 93.10.31.,11면).

○ 맹광호(가톨릭의대 예방의학 교수)

인류의 질서를 파괴하는 인간배자 복제실험은 두번 다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범세계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인간의 생명이 자연의 섭리를 어기고 기계적으로 창조된다면 인류는 언젠가는 엄청난 재앙에 직면할 수도 있다(세계 94. 1.31., 4면).

○ 박금자(여성불임연구소 소장)

배자복제는 시험관 수정이 보급되면서 이미 예견되어 왔으나 이런 연구가 계속되고 남용될 경우 자연의 섭리에 위배된다. 인간의 존엄성마저 부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윤리적 한계가 설정될 때까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동아 93.10. 27., 1면).

○ 서유헌(서울대 의대 약리학교실 교수)

어떤 경우에도 유전자 이식동물의 제조는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자연의 섭리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공익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유전자이식동물 제조」 제3차 국제 뇌연구분야 박사급 워크숍, 국민 93. 8.17.,10면).

○ 장윤석(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

배아를 복제하는 일은 냉동정자 및 냉동난자 냉동수정란등 동결보존기술에 의한 시험관아기기술 프로그램의 보편화와 함께 이미 80년대 후반부터 예견되어 온 것이나, 종교적으로나 사회적·법적으로 이러한 의술이 용납될 수 없기 때문

에 그야말로 연구를 위한 연구수준에 머물러 왔을 뿐이다. 이 기술이 더욱 발달하면 배아복제의 바로 전단계서 수정란의 유전자를 조작, 염색체까지 똑같은 복제인간을 수도 없이 만들어 내는 일도 오래지 않아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자연섭리에 위배되는 인위적인 인간생명의 창조는 어떤 경우에도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국민 93.10.26.,19면).

○ 김종배교수(건국대 축산가공학과 교수)

복제기술은 유전자 조작일뿐 결코 생명의 창조기술이 아니지만 아주 위험한 사상을 파급시킬 가능성이 높다. 인간의 형체를 인간이 변형시킨다는 것은 결코 용납되어선 안된다. 과학기술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경향 93.10.31.,15면).

〈종교계〉

○ 신성종(충현교회 담임목사)

인간은 피조물이자 창조자가 아니다. 생명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했다는 것으로 이는 제2의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다. 인간의 판단력은 완전무결할 수 없다. 이것이 실용화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를 것이다(국민 93.10.28.,21면).

○ 조덕영(한국창조과학회 간사)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인간의 뜻대로 창조한다는 것은 창조질서를 완전 파괴하는 행위다. 과학기술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합당하게 쓰여져야 한다. 인간의 존재가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되게 하는 복제술은 결코 실용화되어서는 안된다(국민 93.10.28.,21면).

○ 최창무(신부, 가톨릭대학 총장)

이같은 실험은 인간의 존엄성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엄청난 일이며, 인간생명이 연구대상이 되는 것에서부터 잘못이 시작되고 있다(경향 93.10.31.,15면).

○ 이지관(스님, 가산불교문화원장)

인간복제실험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작은 이익을 위해 몇백배의 해를 낳는 일이다(경향 93.10.31.,15면).

○ 김용표(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인간복제는 연기설과 윤회 및 업보 등 불교의 기본적 교리와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이에 대한 교리적 연구가 필요하다(경향 93.10.31., 15면).

〈언론계〉

○ 동아일보 칼럼

의학은 인간을 고통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발전한다. 불임부부의 고통을 구제하기 위해 체외수정을 통한 불임시술법이 개발되었으나 착상에 실패함으로써 어렵게 얻은 생명인 수정란을 잃고 마는 안타까움을 해결하려는 데 이 배자복제연구의 본래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악용되는 경우만을 두려워 할 일 이겠는가 인간의 양심과 지혜를 믿고 싶다(동아 93.10.28., 1면).

○ 서울신문 칼럼

이번 실험 자체는 시험관수정에서 행해지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의 한 과학자가 지적했듯이 문제는 이것이 남용될 수 있다는 점이며, 이런 연구가 계속된다면 어디쯤에서 중단해야 할 지를 결정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윤리성이 결여된 과학기술은 악마의 소유물이 될 수 있다. 확고한 생명윤리가 도덕적 차원에서는 물론 법적·제도적 차원에서도 세워져야 할 때다(서울 93.10.27., 2면).

○ 조선일보 사설

인간 복제실험에 대한 우려는 세가지 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첫째는 인간이 이런 실험을 감히 할 수 있느냐는 원칙에 대한 것이며, 둘째는 실험이 인권존중의 차원에서 인류에 봉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가 이며, 셋째는 실험결과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이다. 과학자 자신의 책임의식과 윤리적 태도가 선결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그에 앞서 여러 가지 규제장치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생명과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같은 문제를 미리 심각하게 검토 대비할 필요가 있다(조선 93.10.28., 3면).

○ 이경자(신문방송학 교수)

복제인간의 출현은 사회질서나 도덕, 윤리가 실종된 아노미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복제로 태어난 아기의 장기 등 신체 일부가 다른 사람을 위해 쓰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제인간들이 범죄조직들에 의하여 악용되는 등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세계 94. 1.31., 4면).

〈학 계〉

○ 양수산(한국외국어대 법과교수)

복제인간의 탄생과 반수·반 인간의 “키메라” 동물 내지 인간과 인간의 잡종 출산을 실험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 됨은 물론이므로 재론의 여지없이 위헌으로 보지 않으면 아니된다(전계논문 263면).

○ 장영민(인하대 법대 교수)

수정란을 유전자조작 등의 연구대상으로 삼거나 폐기하는 행위 따위를 현행 형법은 전혀 예상조차 하지 못했다. 따라서 착상전 배아도 「태아」와는 별개로 인간이라는 생명체로 탄생할 잠재력을 가진 존재인 만큼 「잠재적 인격주체성」을 인정해야 하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법률로써 규제해야 한다. 「복제인간」 「잡종인간」 등에 대한 법적 처리문제에 봉착하기 전에 입법을 서둘러야 하고, 이러한 입법 자체가 응용과학분야에서 발견될 수 있는 「윤리불감증」을 환기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수정란에 대한 유전자조작은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금지되어야 한다. 특별법 제정 이전에 여러 가지 보호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 의사나 연구자의 직업윤리강령을 통해 1차적으로 규제한 다음 각종 행정법적 제재를 가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형벌에 의한 규제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생명공학의 형법적 한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주최 학술세미나, 「의료와 형법」 주제발표논문, 93.10.29).

○ 최상렬(시민)

인간복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20세기적 고정관념, 배타성, 폐쇄적 사고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자 현상이다. 21세기에 과학자들이 인간과 같은 지능

을 가진 생물로봇을 만들어 인류로 하여금 더욱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대의 도래를 예측한다면 인간복제라는 기술을 더 합리적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오히려 빠른 과학기술 발전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국가나 사회의 정책입안자의 사고와 태도가 더 염려스럽다(조선 93.11.1., 19면).

* 입법례

- 프랑스 인간개조금지법안: 유전자 조작을 통한 인간개조행위 금지
- 독일 체외수정란 보호법: 유전자조작 금지

2) 수정란의 실험

○ 양수산(한국외국어대 법과 교수)

처음부터 실험을 목적으로 하여 난세포를 수정을 하는 것은 인간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태어나려는 인간의 생명을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이는 처음부터 생명의 파기를 뜻하는 것이므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 되어 위헌적인 행위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본래 자궁내에 이식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수정된 수정란으로서 사정상 모의 체내에 이식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수정란의 발육정도가 아직 초기인 한 정자와 난자를 제공한 사람의 동의를 얻어 수정란을 실험하여도 합헌성에 관해 의구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이다(전계논문 262면).

5. 대리모 문제

○ 양수산(한국외국어대 법과 교수)

대리모에 의해서 자가 출산되는 경우에는 분만 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특히 모체내에서의 성장·발육이 자의 인격의 형성·유지의 중요한 일부분이 되며 이와 같은 자의 중요한 성장, 발육을 위해서는 임신부와 자간의 정신적인 밀접한 관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도외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리모계약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계약으로서 헌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지 않으면 아니된다(전계논문 259면).

○ 한봉희(동국대 법대교수)

우리 민법상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리모계약은 위법한 계약일 수 밖에 없다. 대리모계약의 기본적 핵심은 자의 출산 후 그 자를 생물학적·유전학적 부모(의뢰부모)에게 인도하고 친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출생된 자의 복리를 생각해서라도 자의 친권자는 의뢰부부가 되어야 할 것이며, 낳은 대리모에게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필요하다면 면접교섭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전통적 친자법의 원리에 위반되기 때문에 대리모계약을 금지하는 입법이 필요하다(전계논문 173면).

○ 장영민(인하대 법학과 교수)

모든 경우의 대리모를 부정한다는 것은子を 얻기 위한 인간의 욕망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우리 나라와 같이 대를 이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한 나라에서는 이를 위한 축첩 등의 폐단이 있어 오히려 이를 인정하는 것이 더 윤리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영리의 목적이 아닌 순수한 동기의 대리모는 제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본다. 예컨대 자매간에 일방의 불임을 극복하여 주기 위하여 대리모가 되어 주는 경우까지 금지할 이익이 있는가는 의문이다.

그러므로 우선 임신과 자의 획득을 분리시키는 경향이 대두될 것에 대응하여 대리모에게 임신을 의뢰할 수 있는 부부를 확정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예컨대 대리모 이외의 방법으로서는子を 얻을 수 없다는 산부인과 전문의 2인 이상의 판단이나, 법률가, 의사, 사회사업가 등으로 구성되는 의학협회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든가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리모가 될 부녀에 대해서는 유상 또는 영리 목적의 대리임신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전계논문 21면).

○ 대한의학협회: 대리모에 대한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을 하는 경우 「비배우자 인공수정의 시술지침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뿐 그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동 지침 제2항).

* 입법례

- 스웨덴 인공수정법 제7조: 「상습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인공수정을 벌금이나 6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
- 영국 대리모계약법(Surrogacy Arrangement Act, 1985): 영리적 목적을 위하여 행하는 대리모계약(제2조)과 이와 관련된 광고(제3조)를 금지하며, 이의 위반을 처벌(제4조).
- 오스트레일리아 불임법(84.10): 대리모계약을 무효로 하며,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하고 있다(동법 제5절 30조).

6. 인공수정에 관한 문제의 합헌성 여부

1) 인공수정과 학문의 자유

○ 양수산(한국외국어대 법학과 교수)

연구의 자유도 다른 모든 절대적 자유와 마찬가지로 헌법질서나 타인의 권익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는 내재적 제약을 받으므로 헌법질서나 타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규범에 저촉되는 연구의 자유는 이익의 교량에 의해서 합헌여부가 판단될 것이다. 인간에게 유전공학적인 방법이 사용되므로 인해서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어 있는 다른 기본권이 침해당할 때에는 그 한계가 있는 것이다(「인공수정에 관한 제문제의 합헌성 고찰」, 현대가족법과 가족정책, 삼영사, 1988, 250면).

2) 우생학적인 목적의 인공수정의 경우

○ 합헌설: 夫 아닌 제3자의 정액이나 妻 아닌 타인의 난자로 인공수정을 하는 경우, 그 인공수정이 우생학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이강희(한남대, 「인공수정자의 친자법상의 지위」, 사법행정 제 286호, 1984년 10월호, 30면; 이상태, 「부부의 인공수정과 법적문제」, 아세아여성연구 23집, 1984, 293면).

○ 위헌설: 인간의 존엄이 생래적·천부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것인 한, 우생학적인 목적으로 부 아닌 제3자의 정액이나 처 아닌 타인의 난자로 인공수정을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해서 보장받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음이 분명하다(양수산, 전계논문, 253면).

7. 관련 문제

1) 정자, 난자의 법적지위

○ 고정명(국민대 법학과 교수)

인체로부터 분리된 경우는 법리상으로는 물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인격적 측면에서 정자 및 난자를 증여 또는 매매의 대상으로 하는 처분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며, 인체의 타부분과는 달라서 인간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깊은 관련을 가지므로 불임치료의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엄격한 제한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전계 논문, 15면).

2) 수정란의 법적 지위

○ 문국진(고려대 의대교수)

현재의 인간의 존재는 수정란의 연장에 불과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또 법이 수정란을 하나의 인격의 기초로 인정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인공수정의 법의학적 문제(중)」, 법률신문 1986.11.17., 13면).

○ 고정명(국민대 법학과 교수)

생명의 시기는 모체에의 착상시로 봐야 하며 착상전에는 권리주체의 실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체외수정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당사자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할 것이며, 수정란을 폐기하더라도 형법상 손괴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낙태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수정란이 착상이전의 상태라 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수정란을 취급할 경우에는 언제나 난자 또는 정자제공자인 부부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전계논문 16면).

○ 한봉희(전북대 법과교수)

착상전의 수정란은 아직 인간으로서의 생물학적 구조를 갖지 않으므로 인간으로 취급될 수 없고 다만 장차 인간이 될 잠재성으로 말미암아 인간 생명의 상징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인공수정의 연구」, 법학연구 제14권, 전북대, 1987, 289면).

* 입법례

- Louisiana주법(Louisiana Revised Statutes, 1986년) 121- 133: 수정란은 한개 또는 그 이상의 인간세포이고 태아로 발전할 수 있는 인간의 유전자적 물질로서 일정한 권리를 갖는 존재이다. 수정란은 법률상 인격을 갖춘 존재이고(R.S. 124), 체외수정을 시술한 환자가 자기와의 동일성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 민법이 인정하는 부모로서 수정란에 대한 감호권을 가지며(R.S.126), 연구 기타의 목적으로 배양되어서는 안되고, 수정란의 매매는 명백히 금지된다(R.S.122).

3)체외수정 시술계약의 내용

○ 전종영(불임학회)

체외수정은 치료법으로서 성공률이 낮고 또 여성의 체내에서 채란을 3회밖에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료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체외수정에 대한 설명의무와 함께 인공수정을 받을 여성의 동의가 필수적인 것으로 되어 있다(「환자의 선택」, 불임학회지 83면).

○ 고정명(국민대 법학과교수)

자는 자기의 출생에 관한 선택의 여지가 없겠으나 자에게 위험을 미쳐도 괜찮을 도의적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을 것이므로 체외수정계약에 있어서도 「출생되어진 자」의 이익을 보호할 윤리적 의무가 관계자 전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수정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 고정명(국민대 법학과교수)

수정란의 파기에 대하여는 반드시 의뢰인의 동의를 필요로 할 것이며 또 의사의 기술상 미숙으로 인한 수정란 형성의 실패에 따른 책임은 수정란에 대한 인격성부여의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않더라도 계약책임 내지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없다(전계 논문 22면).

* 입법례

Jacobs v. Theimer 519. S.W. 2d 846: 미래의 인격체인 수정란의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측의 부당한 수정란파기로 인한 일종의 재산적 손해와 임신의 기회를 잃게 된 것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로서의 배상책임을 인정함.

5) 냉동정액보존과 인공수정

- 보존된 정액의 소유권문제, 정액제공자의 사망 후에 정액의 상속문제 등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특히 친자법상 애매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혼인중의 자 여부

* 입법례

○ 필요성: 인공수정에의 응용, 장애의 불측의 사고나 질병시 이용, 부의 불임수술전 비축, 수송이 편리한 점에 이용.

○ 소유권: 프랑스 법원에서는 남편의 냉동정액의 소유권을 미망인에게 인정 (프랑스 크레테유법정 84.8.1 판결:한국일보, 84.8.3.,12면).

6) 잉여수정란의 처리

- 자궁내에 이식을 하는 데 필요로 하는 이상으로 난세포를 수정함으로써 잉여수정란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처음부터 자궁내에 이식을 하지 않을 난세포를 수정함으로써 수정란의 사멸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권을 침

해하는 것으로 위헌적인 행위임이 분명하다

자궁내에 이식을 하기 위해서 냉동된 수정란을 해동할 때에 수정란 중 일부가 파괴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행하는 것이나 해동시 수정란이 파괴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필요한 양 이상으로 난세포를 수정하였다가 모체내에 이식할 수 없는 잉여수정란이 발생하여 수정란의 폐기가 불가피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같은 경우도 역시 처음부터 이식할 수 없는 난세포를 수정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에 보장된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 현단계로서는 하나의 난세포만을 수정을 하도록 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자궁내에 이식을 하는 데에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난세포만을 수정하도록 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또 수정란을 냉동보존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해동을 할 때 일부 수정란이 사멸되는 것이 현실인 한, 미리부터 냉동보존할 것을 예정으로 하여 초과인공수정을 하는 것은 금지할 수밖에 없으며, 다만 사정상 당장 자궁내에 이식을 할 수는 없으나 가까운 시일내에 이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수정란의 냉동보존을 허용하지 않으면 아니된다(양수산, 「인공수정에 관한 제문제의 합헌성 고찰」, 현대가족법과 가족정책, 삼영사, 1988, 257면).

Ⅲ. 입법방향

1. 각계의견의 검토

사람에 따라서는子を 갈망함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 여러가지 장애요인에 의하여 자연수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데에서 창출된 것이 인공수정이다. 그러나 과연 인공수정이란 방법이 기존 사회문화의 제가치와 일치하는가 아니면 현재는 상반되더라도 미래에는 수용가능한 것인가에 논란의 초점이 모인다. 생식기관이나 능력에 하자가 있는 혼인당사자(부부)나 독신자는 결코 자연에 반하는 인위적 수단으로써 자를 가질 수 없게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그 대신 양자입양을 장려할 것인가, 아니면 예외적으로 수용하여 긍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여기에는 여러 측면에서

제각기 긍정과 부정의 논리가 전개됨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인공수정은 이를 이용하게 되는 당사자를 중심으로 하여 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심각한 종교적·윤리적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보급의 폭을 넓히고 있다. 또한 의학 및 보조과학의 발달은 그 기술을 한층 더 용이하게 만들어주고 임신출산을 꺼려하는 무통풍조는 다른 측면에서 인공수정에 의한 출산을 자극하기도 한다.

인공수정에 의한 자녀의 출산은 부부 자신에 의한 자녀출산과 본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예상치 못했던 시민법원리로는 성립할 수 없는 원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법만으로는 이에 관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나친 유추적용을 면할 수 없다. 이 점은 영국이나 미국의 판례나 입법에서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제기된 각계각층의 입법의견을 요약,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수정법의 제정 필요성에 관한 문제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의료인과 관계자의 윤리의식에만 의존하기에는 인공수정에 관련된 문제는 현실적, 법적 중대성을 띠고 있으며, 최소한도 인공수정의 시술과정 전부에 걸쳐 합리적인 규율이 필요하며, 인공수정의 진전 정도에 따라 높은 강도의 법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는 대부분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외국의 예에서도 인공수정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공수정자의 법적 보호와 함께 합리적인 인공수정 기술을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서구의 경우 출산장려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억제라는 정책을 아직 유지하고 있다는 현실적 차이가 있으므로 인공수정을 인정하는 범위가 동일하게 해석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한 고려가 각계의 의견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둘째, 인공수정의 시술요건에 관한 제한이다. 현재 대한의학협회에서는 「인공수태 윤리에 관한 선언」을 통하여 통칙적 선언과 비배우자 인공수정시술지침,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시술지침, 인공수태시술 의료기관의 요건을 정하고 내부적·자율적 통제로서 인공수정의 기술을 관리하고 있다. 이는 현행 의료법이 인공수정에 관한 의료인의 위법행위를 단순히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 해석상 포함시켜 규제하는 추상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러한 윤리선언

을 위반한 의료인의 행위는 그 의료법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게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는 구체적인 사건의 발생시 이 기준은 해석상의 기준에 불과하며, 법령상의 규정으로서 효력은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하나의 지침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가진다. 인공수정이 특별히 관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행하여 짐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법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의가 없다. 다만, 보사부의 경우는 의료인의 비윤리적 행위라는 의료법상의 포괄적 처벌규정을 확대해석하고 행정지도로써 문제해결을 꾀하려고 하는 입장에 있고, 아직 적극적인 특별법의 제정계획이 없다는 소극적 자세에 머물고 있다.

인공수정법의 제정은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의 법적 보호와 함께 인공수정시술과정 역시 법적으로 규율되지 않으면 결국 인공수정자의 보호는 헛수고에 그칠 염려가 있다.

인공수정의 시술요건과 관련하여서는, ①夫의 동의, ②피수정자의 허용범위, ③시술기관과 시술의료인의 자격기준, ④시술여부의 결정과정, ⑤정자제공회수의 제한, ⑥인공수정 관련 비밀의 유지와 인공수정자의 알 권리 등이 문제됨은 이미 살핀 바와 같다. 夫의 동의는 반드시 書面으로 하여 시술기관이 보관하게 하여야 하고, 시술기관과 시술의료인의 자격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의견은 아직 없다. 전술한 대한의학협회의 「인공수태 윤리에 관한 선언」에는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의 경우를 나누어 후자의 인력 및 시설기준을 더 강화하고 있으나, 인력과 시설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종합병원이든 개인병원이든 관계없이 그 조건에 만족하면 인정하고 있다. 스웨덴처럼 국공립병원이라는 설립주체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 이는 인공수정시술관련 기록의 보존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스웨덴의 인공수정법은 70년이라는 보존기간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병원의 존폐가 곧 기록의 보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피수정자의 허용범위에는 독신여성 내지 이혼녀가 문제되는데, 다수의 의견은 혼인중의 부부에 한정하고 있으나, 여권신장이라는 입장에서 허용하자는 의견도 있다. 이는 미혼모와 독신여성의 증가추세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명확한 원칙이 있어야 할 부분이다. 대한의학협회의 입장에서는 자연수태 과정에 결합이 있다고 판단된 불임증의 경우에 인공수정아를 정상적으로 양육할 능력이 있는 불임부부에 한하고 있

다. 보관 중인 냉동정액으로 인공수정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의견들이 명확하지 않다. 결국 이는 인공수정으로 출생할 자의 복리를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불임의 치유를 통한 자의 출생이라는 불임부부의 이해관계에 중점을 둘 것인가 하는 기준의 문제로 집약된다. 친자법의 이념과 직결되는 것이기도 하다. 시술여부의 결정은 AIH의 경우와 AID의 경우를 동일한 절차로 할 것인가 아니면 후자의 경우에는 좀더 엄격한 절차를 거쳐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된다. 이는 시술 담당의사의 재량적 결정에 맡길 것인가 아니면 의사윤리위원회와 같은 특별한 기구에서 결정하게 하거나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두는가 하는 것으로 나뉜다. 이 점은 시술 전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의 해결에 예방적 조치와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자제공회수의 제한은 가족법상의 근친혼금지 규정과도 관계가 되고, 현실적으로는 각각 다른 병원에서 행하여진 정자제공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는 한 사전적인 예방은 불가능하고 사후적인 제재나 책임의 추궁만 가능할 뿐이다. 심리적, 사전적 억제 기능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인공수정시술관련 비밀의 보장과 인공수정자의 알 권리는 서로 상충관계에 있는데, 일반인을 상대로 한 비밀의 유지에는 이견이 없지만, 관련기록의 보존기간과 인공수정자의 알 권리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인공수정자의 알 권리는 전술한 인공수정자의 복리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는 현대 친자법 이념에서도 이견이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과 인격권의 절대적 보장이라는 헌법적 이념에도 위반한다는 견해도 있는데 인정설과 부정설로 나뉘고 있다.

셋째, 인공수정자의 가족법상의 지위에 관한 문제는 친자법의 이념이 양친 중심에서 자의 복리 중심으로 변화하는 추세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AID의 경우 인공수정자에게 친생자 추정을 인정할 것인가, 夫의 친생부인권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부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직접적으로 인공수정자가 혼인중의 친생자로 되는가 아니면 일반적 양자로 되는가 하는 것으로 귀착된다. 친생추정을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로, 친생추정을 받지 못하면 친자관계존부확인 소로 법적 관계를 다투게 되고, 그 소의 당사자 적격 범위도 다르게 되며, 제소기간도 다르게 된다. 친생부인권의 인정은 친생추정을 전제로 한 것이며, 그 인정여부는 인공수정자의 복리와 가정의 평화라는 이념의 대립과 관계된다. 부

의 동의와 친생부인권의 인정은 상관관계가 있는데, AID의 경우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한 부의 시술동의를 있어야 하는데, 후일 이러한 동의를 반복하여 친생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남는다. 물론 부의 동의가 없는 인공수정의 경우에도 친생추정을 인정하는 일부 견해도 있다. 정액·난자제공자를 익명으로 하는 문제는 인공수정자에 대한 문제로서 자기의 혈통을 알 권리를 보장할 것인가, 아니면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공개를 금지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시술기관의 인공수정 시술기관 관련 기록의 보존과 함께 이해관계인인 인공수정자에게 열람청구권을 인정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후일 인공수정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 있어서 관련기록의 공개를 법원이 요청할 경우 이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까지로 확대될 수 있다. 현재의 부와 모로 되어 있는 부부 쌍방에게 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개여부의 결정권을 주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다.

넷째, 대리모 문제는 인공수정의 의학적 방법과 반드시 결합하게 된다는 점에서 인공적 출산의 한 형태로 된다. 협의의 인공수정은 AIH이든 AID이든 모두 자궁의 모와 법률적 모가 일치하지만, 대리모의 경우에는 법률상의 모와 자궁의 모가 다르다는 데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인공수정의 경우와는 더 복잡한 문제가 있게 되는데, 이는 의뢰부부와 대리모 삼자가 당사자로 되는 계약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대리모계약 자체의 유효성 문제와 대리모의 권리, 의뢰부부의 권리, 자의 친자법상의 지위가 복합적으로 문제가 된다. 대리모계약을 무효로 보는 경우와 유효로 보는 경우에 따라서 출생자의 법적 지위와 보호가 다르게 된다. 대리모계약을 유효로 보는 경우에도 출생자는 의뢰부부측에게는 夫의 경우는 인지를 통한 혼인중의 자로 되고, 妻의 경우에는 대리모계약에 근거하여 양자관계가 발생한다고 보게 된다. 대리모계약 일반의 효력문제, 자의 지위, 유아인도 또는 인수의 거부문제, 출생근원공개청구의 문제 등이 문제가 된다. 대리모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약속된 보수 및 유아의 인도, 자의 지위와 관계되는 자와 대리모·대리모의 夫·의뢰자와의 법적 관계가 문제가 되고, 양육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의 문제도 발생한다.

어쨌든 대리모계약의 일반적인 형태가 인공수정의 방법에 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공수정법의 영역에서 규율될 사항이 많고, 그러한 입법례도 있다. 물론 친자법에서 대리모에 의하여 출생되는 경우를 규정할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대한

의학협회의 윤리선언에서는 대리모계약에 의한 인공수정은 그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하고 있는 점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인간 배자 복제와 관련한 배아보호법의 제정여부에 관하여는 배자 복제가 인공수정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점에서 이를 인공수정법의 영역에서 규율하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이는 수정란의 보관, 처리, 실험에 관한 문제로서 생명공학의 한계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학문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상의 기본이념의 충돌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단순한 법적 문제로 보기에선 심각한 면이 있다고 보는 것이 각계각층의 일반적인 의견 경향이다.

여섯째, 인공수정과 관련된 문제로서 인공수정의 합헌성문제, 정자·난자·수정란의 법적 지위, 수정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냉동정액의 보존과 잉여수정란의 처리문제가 부수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는 특히 인간으로서의 시점을 수정란상태로 보느냐, 아니면 착상의 상태로 보느냐에 따라 그 기본적인 방향이 크게 다르게 된다. 또한 정자은행의 설립과 운영과 관련하여 이의 법적 규제가 반드시 필요한가 하는 문제 및 夫가 사망한 후의 냉동정액을 이용한 인공수정을 허용하는가 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문제에 관하여 논의가 제기되고는 있으나, 확립되거나 일치된 의견은 보이지 않고 있다.

외국의 입법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인공수정법, 친자법 등에서 인공수정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두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해석 내지 판례를 통하여 이를 규율하는 국가도 없지 않다. 반면에 우리 나라는 대한의학협회의 '인공수태 윤리에 관한 선언'이 가장 상세한 지침으로 되어 있고, 일부 학자들에 의하여 '인공적 임신에 관한 법(시안)', '完全養子法(案)'이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관련된 판례도 극소수에 그치고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2. 입법방향

이상의 각계의견을 종합하고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인공수정법(가칭)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인공수정에 관한 입법적 대응책으로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인공수정을 법적으로 철저히 봉쇄하는 방법, 둘째는 법적으로 간섭하지 않고 일체 방임하는 방법, 셋째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경우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한적 조치 등을 들 수 있다. 아직 전면적으로 인공수정을 허용하고 있거나 하려는 입법례는 없다.

법적으로 금지하는 방법은, 종교적 시각이나 혹은 개인적 인생관에 의해 인공수정을 부정적으로 보아 금기시하는 경우 인공수정이 반자연적이라는 이유 등에 근거하여 이를 강압적으로 처벌하고 억제하는 인공수정금지법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자에 대한 욕구가 인간의 본능적 요소이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법규로써 인공수정의 금지를 어느 정도 실효성 있게 통제할 수 있는가가 의문이다. 실효성의 문제는 차치하고 우선 국가는 금지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법의 강제가 본능을 억압할 때 흔히 탄력적 반작용을 일으키며 법기능의 무력화 내지 사문화를 초래하는 사례를 흔히 보는 바처럼 금지법의 제정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

인공수정에 대한 방임적 입장의 경우 인공수정에 임하는 당사자의 판단과 사회적 양식에 맡기자는 것이 된다. 현재의 우리 나라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인공수정이 비공개리에 널리 보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고, 또 사실상으로는 법률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예견되는 이상, 국가가 인공수정을 허용하건 아니건 간에 어느 정도의 법적 조치는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된다.

인공수정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나 혹은 일절 불허하는 경우라도 암암리에 진행되는 인공수정의 폐단을 결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제정된 영·미·불·독·스웨덴·덴마크 등의 인공수정법규를 참고하되 이들과 달리 인구억제정책을 쓰고 있는 우리 나라의 국가정책과 상응한 각도에서 입법의 방향과 정도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인공수정법의 기본방향이다. 인공수정을 허용하는 민법의 특례법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인공수정으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산적 성격의 법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전자의 성격을 띠는 경우 전통적 친자법과 혼인법의 이념 및 원리와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입법되어야 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그러한 기존 가족법질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법이 될

것이다. 반면에 후자의 청산적 성격의 법은 기존의 가족법질서를 원칙적으로 유지하되,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합리적인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보아 인공수정으로 발생하는 폐단 내지 문제점을 결과적으로 처리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를 두게 된다.

셋째, 인공수정법의 제정시기 문제이다. 현재 대한의학협회의 '인공수태 윤리에 관한 선언'과 같은 자율적 지침과 의료인의 윤리의식에 의존하고, 인공수정자의 법적 지위는 현행 가족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상태를 당분간 유지하되, 현실적으로 인공수정으로 인한 문제가 법현실로 상당한 정도 대두되었을 때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이 있다. 법적 규제의 대상도 우선 인공수정 시술자와 시술기관에 관한 행정적, 절차적 규제를 선행시키고, 그 이후 가족법 영역의 사항을 입법화하고, 마지막으로 형법적 제재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다. 인공수정의 문제는 의료적 문제와 친자법적 문제가 병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인공수정의 시술에 관련한 입법과 인공수정자의 법적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은 동시에 입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넷째, 인공수정법의 내용으로서는 위의 선결문제가 정하여져야 함이 원칙이지만, 최소한도의 사항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①인공수정시술의 대상과 적격성 기준, ②인공수정시술기관의 인력과 시설요건, ③인공수정 시술기관 및 시술의사의 의무, ④인공수정 시술의 사전 절차적 요건, ⑤인공수정의 생명공학적 허용범위(AIH, AID, IVF, E.T, 대리모, 유전자조작 등), ⑥Donor의 법적 책임, ⑦夫의 부인권, ⑧비밀준수의무, ⑨인공수정 시술관련 기록보존의무 유무 기타 위반시의 행정제재규정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물론 여기에 부가하여 친자법상의 효력규정 예컨대 친생추정, 정자제공자의 인지의 금지, 동의없는 인공수정의 효력, 양자법과의 관련사항 등과 인공수정 시술관련 규정으로 정자·난자의 보관, 수정란의 보관과 처리, 수정란의 실험여부, 정자제공회수의 제한, 시술여부의 결정에 대한 이의절차, 시술의 감독체계, 시술의사와 기관의 책임 등을 상세하게 들 수도 있을 것이다.

다섯째, 인공수정과 관련하여 의료법, 민법의 친족법편과 채권법편, 입양특례법의 관련규정을 염두에 두고, 이들을 포괄하는 규정을 둘 것인지, 아니면 직접

해당 규정을 보완할 것인지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법 제53조 1항의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포괄적 조항, 민법 제844조의 친생자추정규정, 민법 제750조 이하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규정, 입양특례법 제2조의 입양특례자의 범위 규정이 그 예가 된다.

한편, 일부에서 제기된 완전양자(특별양자)법의 제정도 인공수정자의 법적 지위를 합리적으로 보호한다는 점에서 고려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인공수정자에 관한 특별법이 없는 우리 나라에서는 실제로 민법상의 친생자에 관한 규정을 인공수정자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나, 이러한 때에도 앞에서 열거한 기본적인 사항이 주의 깊게 반영되어야 할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특히 출생자녀의 정상적인 양육을 위하여서는 여러 규정이 총체적으로 연결,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입법의 여부를 떠나서 인공수정에 의한 자녀출산에도 관계당사자에게 확고한 책임감이 있어야 함을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녀를 출산하려는 당사자로서의 부부는 물론 정액을 제공하는 Donor, 기술을 담당하는 의사 모두 단순한 이해관계를 따지는 당사자가 아니라 사람을 출생시키는 숭고한 일의 관계당사자이다.

인공수정에 의한 자녀의 출산문제는 현행 친족상속법 등을 유지하되 별도의 특례법이 제정되기에 충분한 내용이며 중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한 입법에서 무엇보다도 혼인질서의 계속, 혈연사회의 존중, 친자의 윤리질서, 출생자녀의 양육 및 이익보호 그리고 가족생활의 안정보호 등 가족법상의 가치와 이념이 철저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I. 대한의학협회 제정 『인공수태 윤리에 관한 선언』 (1993.5.6)

〈인공수태윤리에 관한 선언〉

1. 인공수태시술은 자연수태 과정에 결합이 있다고 판단된 불임증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한다.
2. 인공수태와 관련된 제반 과정에서는 생명의 존엄성과 절대가치가 존중되어야 하며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3. 인공수태시술시에는 대한의학협회 제정〈인공수태시술지침〉을 엄격히 준수한다.
4. 인공수태시술을 시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대한의학협회 제정〈인공수태시술의료기관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 인력과 시설에 관하여 대한의학협회의 심사와 인준을 받아야 한다.
5. 인공수태시술을 시행한 의료기관은 그 시술내용을 연 1회 이상 대한의학협회 (또는 동 협회가 지정한 관련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비배우자 인공수정시술지침〉

인공수정에 있어서 비배우자 인공수정이란 배우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공여된 정액을 여성의 생식기(질, 자궁강)내에 임신을 목적으로 직접 주입시키는 시술로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1항 비배우자 인공수정을 시술받는 불임부부에 관한 사항

가. 시술 적응증

- 1) 비가역적인 무정자증으로 진단된 불임남성
- 2) 남성측 불임요소와 연관된다고 믿어지는 희소정자증 또는 부적절한 정(자)액상태나 질환을 가진 배우자
- 3) 남편이 유전적 질환을 가진 경우

- 4) 부상, 수술, 약물투여, 방사선 치료 및 정신과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된 교정불가능한 사정기능장애와 이상정자 등 남성 결함이 인정되는 경우
- 5) 남편이 Rh 양성이고 부인이 Rh 음성이며 심히 감작(Rh-isoimmunization)된 경우
- 6) 기타 의학적인 근거하에 불임남성으로 판정된 경우

나. 불임부부가 지켜야 할 조건

- 1) 부부는 비배우자 인공수정 시술의 과정을 이해하고, 부부간에 시술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남편의 동의하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 2) 시술대상부부는 비배우자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출생아를 정상적으로 양육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법적, 재산적, 도덕적 지위 및 그 외의 모든 조건을 친자와 동등하게 하여야 한다.
- 3) 비배우자 인공수정으로 수태된 태아 및 신생아의 부모로서 도덕적, 사회적 및 법적 문제를 포함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4) 정액공여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보장에 동의해야 하며 정액공여자의 여성부인에 대하여도 수혜자는 법적의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 5) 자연임신에서와 같이 임신중 유산, 이상임신 및 합병증 등이 있을 수 있고 분만 및 출산아에도 이상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제2항 정액공여자에 관한 사항

가. 정신적 및 육체적으로 건강한 젊은 남성으로서 간염, 매독, 후천성 면역결핍증 등 정액을 매개로 전파될 수 있는 질환이 없다고 판정받아야 한다.

나. 정액검사소견이 정상범위에 속해야 한다.

다. 정액공여자의 신분은 비밀에 부쳐지며 공여정액이 비배우자 인공수정시술 뿐만 아니라 의학분야의 연구에도 이용될 수 있고, 그 결과의 공개를 요구할 수 없음에 동의해야 한다.

라. 정액공여자는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비배우자 인공수정 시술로 태어난 신생아에 대해 친자관계 등을 청구할 수 없음에 동의해야 한다.

마. 정액공여자는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 한다. 다만, 피시술자부부중 일방이 한민족이 아닌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항 시술기관 및 시술의사에 관한 사항

가. 대상 불임부부에 대해서 비배우자 인공수정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설명하여야 하며, 제1항의 '나'가 포함된 시술동의서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

나. 정액공여자의 혈액형, 신체적특성, 정액검사소견, 병력 청취결과와 제2항 '가'의 검사결과를 비치하여야 하고,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된 정액공여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다. 시행의사는 정액공여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를 반복 시행한다.

라. 시술시에는 신선정액 또는 냉동정액을 이용하며 현대 의료수준에 입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마. 어떠한 경우에도 정액공여자의 신분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하며, 정액공여자에 대해서도 시술결과를 공개해서는 안된다.

바. 동일 공여자로부터의 정액은 10회 이하 임신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사. 이 시술은 생명의 존엄성에 입각하여 정도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시술지침〉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이란 난소내에 있는 난자를 체외로 채취하여 인위적으로 받은 정액과 시험관(배양접시)내에서 수정이 되게 한 후 그 수정란(배아)을 자궁강내에 이식하여 임신하게 하는 인공수태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시행한다.

제1항 조건 및 적용증

가. 현대의학적 근거하에 양측난관의 부존재 등과 같이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의 방법 이외에는 임신의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된 경우를 최우선적인 적용증으로 한다.

나. 상기 외에도 자궁내막증, 희소정자증 및 기타 원인불명의 불임증 등에서 다른 방법으로 임신성립에 계속 실패한 경우에는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시술의 적응증이 된다.

다. 시술대상 부부는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의 시술과정과 예상성공률 및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을 이해하고 부부간에 시술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술에 동의하여야 한다.

제2항 비배우자 생식세포공여

비배우자의 난자, 정자, 수정란을 공여받아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 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비배우자 인공수정의 시술지침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항 시술기관 및 시술의사에 관한 사항

가. 시술기관은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시술에 필요한 충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사람의 난자, 정자, 수정란을 취급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산부인과학, 생식생리학, 발생학 기타 관련 영역의 의학지식과 기술을 익힌 의사이어야 하고 시술협력자는 기술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 시술의사는 대상불임부부에 대해서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하며, 제1항 '다'의 내용이 포함된 시술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라. 시술시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아니한다.

※ 유전자 조작이란 유전자공학 cloning, 이종간 hybrid 및 chimera 등을 인공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마. 시술시에는 현대 의학수준에 입각하여 시술하여야 하며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한다.

〈인공수태시술 의료기관의 요건〉

인공수태시술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전문인력과 특수시설(해당장비 포함)을 갖춘 의료기관이어야 한다.

1. 인공수정

가. 인 력

- 1) 산부인과 전문의(기술담당책임의사)
- 2) 기술협력자(생물학 등 인공수태 관련분야의 지식을 습득한 자로서 기술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자)

나. 시 설

- 1) 불임증 진단에 필요한 시설
- 2) 배란유도 및 배란유도과정 추적검사에 필요한 시설
- 3) 냉동정액을 사용하는 경우 정자보관시설(냉동보존기, 액체질소tank 등)

2.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

가. 인 력

- 1) 산부인과 전문의(기술담당책임의사)
- 2) 그외 생식생리학, 발생학 기타 관련영역의 의학지식과 기술을 익힌 의사
- 3) 기술협력자(생물학 등 인공수태 관련분야의 지식을 습득한 자로서 기술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자)

나. 시 설

- 1) 불임증 진단에 필요한 시설
- 2) 배란유도 및 배란유도과정 추적검사에 필요한 시설
- 3) 난자흡인 및 정액채취에 필요한 시설(난자흡인실, 정액채취실, 초음파장비, 원심분리기, 입체현미경, 도립현미경, 무균실험실 등)
- 4) 난자와 정자의 배양 및 수정에 필요한 시설(탄산가스 배양기 등)
- 5) 배양액 제조 및 온도관리 시설(삼투압 측정기, 천칭 등)
단, 다수 의료기관이 공동시설로써 관리운영가능
- 6) 난자, 정자, 수정난을 냉동보존하는 경우 해당 필요시설(냉동보존기, 액체질소 tank 등)

Ⅱ. 인공적 임신에 관한 법(시안 : 고정명교수)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적 임신과 관련한 제반 법률관계와 그 시술의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방법에 따라 태어난 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가정의 화목과 건전한 사회적 성윤리를 유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간의 체내수정이란” 부의 정자를 처에게 인공적으로 주입시켜 임신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비배우자간의 체내수정이란” 부가 아닌 다른 남성의 정자를 처에게 인공적으로 주입시켜 임신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배우자간의 체외수정이란” 부의 정자와 처의 난자를 시험관 등의 체외에서 수정시켜 이 수정란을 다시 처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4. “비배우자간의 체외수정이란” 부의 정자와 다른 여성의 난자를 체외에서 수정시켜 이 수정란을 다시 처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5. “대리모출산이란” 부의 정자를 처가 아닌 다른 여성에게 인공적으로 주입시키거나 부의 정자와 처의 난자를 체외에서 수정하여 다른 여성의 자궁에 착상시켜 임신, 출산케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허용범위) ①배우자간의 체내 및 체외수정은 그 시술방법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

②비배우자간의 체내 및 체외수정은 이 법 제4조 내지 제7조에 정한 바와 같은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③대리모출산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4조(시술대상자) ①인공수정은 법률적 또는 사실적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시술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시술을 받을 때에는 부부공동명의로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5조(의사윤리위원회) ①인공적 임신을 비롯한 의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

정하기 위하여 보사부장관하에 의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보사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위원은 대한의학협회가 추천한 관련분야의 전문가 3인 등 모두 9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는 비배우자간의 인공수정시술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시술의사와 병원) 인공수정은 위원회가 인정한 자격있는 의사에 의하여 동위원회가 지정한 충분한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시술되어야 한다.

제7조(시술절차) ①인공수정을 시술하고자 하는 부부는 먼저 의사에게 부부 쌍방의 합의하에 서면으로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는 당해 부부의 가정적 신체적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인공수정시술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고 그 시술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비배우자간의 시술여부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③정자제공자는 정자제공 동의서를 작성하며 의사는 이를 보관한다.

④정자제공자가 피시술여성의 직계비속 자매 8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에는 그 정자를 사용할 수 없다.

⑤의사는 제공자의 신체이상유무를 검사하고 제공자는 자신의 병력관계를 의사에게 고지해야 한다.

⑥정자채취는 계속해서 3일 이내에는 할 수 없으며, 그 횟수는 모두 10회를 넘지 못한다.

⑦의사는 제공된 정자의 유전적 이상 유무를 검사하고, 그 안전성이 검증된 정자는 최적의 상태에서 보존하도록 한다.

⑧의사는 시술시 여자의 유전인자, 혈액형 등과 조화될 수 있는 정자를 임의로 선택하며 당해 부부와 정자제공자간에는 서로 알 수 없도록 하되, 다만 특별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지정한 정자를 이용하도록 한다.

제8조(비밀유지의무) 의사, 정자제공자,부부 등 시술관계자는 인공적 임신에 의하여 태어난 자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는 출생에 관한 사실을 비밀로 하여야 한다.

제9조(자의 지위) ①이 법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인공적으로 태어난 자는

의뢰부부의 친자로 추정된다

②정자제공자와 인공적 임신으로 태어난 자는 상호 인지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10조(벌칙)시술관계자가 이 법에 정한 각종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2년 이상 4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Ⅲ. 完全養子法(案)

- (정의근, 「완전양자제에 관한 고찰」 808 - 809면)

제1조(목적) 본법은 3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의 완전입양을 위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자의 자격) 이 법에 의하여 양자가 될 자는 만 3세 미만의 자로서 입양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4호에 해당하는 자 및 인공수정자이어야 한다.

제3조(양친의 자격) 입양당시 5년 이상 부부로 생활한 자로서 입양특례법 제3조 제2호 내지 4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4조(양자의 호적) 양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라서 양부의 호적에 적출자로 입적하며, 양친의 호적에 입적함과 동시에 實親과의 모든 신분관계를 출생시에 소급하여 단절한다.

제5조(인지의 소 등의 금지) 자에 대한 認知의 訴 또는 親生子關係存否確認의 訴는 금지된다.

제6조(家裁의 許可) 완전양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정법원은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 子の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제7조(입양의 효력발생) 입양의 효력은 子가 출생한 때에 소급하여 양친의 적출자로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8조(파양금지) 양친으로부터의 파양은 금지된다. 단, 子를 위해 불이익한 사

정이 있는 때에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친자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제9조(경과규정) 이 법 시행 이전에 양친의 친생자로 신고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완전입양된 것으로 본다.

제10조(타법의 준용) 입양특례법 제12조 내지 제15조는 이 법에 준용한다.

IV. 입법례

스웨덴: 인공수정법(85)

- 체내인공수정만 인정
- 비배우자간 인공수정(AID)은 반드시 국·공립병원에서만 실시하도록 하며, 시술 때에는 다른 산부인과전문의의 입회를 의무화
- 인공수정시술의사는 사전에 해당 부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와 생활환경을 조사해 인공수정아가 장래에 양호한 환경에서 양육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인공수정을 할 수 없도록 규정
- 의사는 시술전 반드시 남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 병원은 시술에 관한 자료를 70년동안 보존해야 함
- 정자제공자의 선택은 전적으로 의사의 소관사항으로 규정하여 피시술자의 정자선택권을 철저하게 배제함
- 상습적으로 또는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법적인 인공수정을 실시하는 자에 대해서는 벌금형 또는 최고 6월의 징역형을 처벌규정으로 두고 있음

독일: 「체외수정란 보호법(Embryonenschutzgesetz(E Sch G) vom 13. 12,1990)」

- 지정된 국·공립병원 등에서만 시술
- 법률적 부부에게만 시술
- 체외수정 외에는 임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연구를 빙자한 형식 등의 체외수정란 이용금지
- 유전자조작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음.

미국: 29개주에서 인공수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중임

- 펜실베이니아주 인공수정자법(1964년) : ○인공수정 기술·피기술자의 신상 ○기술장소 ○정자 제공자에 대한 사전검사 및 신상 등을 연 4회 이상 보건 당국에 보고토록 함.
- 조지아주, 오클라호마주: 자격있는 의사만이 부부의 진실한 요청과 문서에 의한 동의가 있을 때 기술이 가능하도록 규정. 동의서는 증거자료로서 특수한 경우에만 법원의 명령에 의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AFS(미국 수정학회) 규정: 인간의 수정란을 14일 이상 실험하지 못한다
- 통일친자법(Uniform Parentage Act, 1973): 夫의 동의하에 인공수정을 한 경우 그 출생자는 부의 혼인중의 자로 본다(동법 제5조)

영국:

- 대리모조정법(Surrogacy Arrangements Act 1985): 금전거래를 통한 대리모계약을 금지
- 수태 및 수정란보호법(Human Fertilization and Embryology Act 1990): - 인공수정시 태어나는 아이의 복지를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산모의 나이제한 규정은 없다. 체외수정을 인가·감독하는 인공수정협회에 따르면 현재 52세까지의 여성이 체외수정에 의한 불임치료를 받고 있다.
- 기술기관의 감독과 인공수정의 남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동아 93. 1.21., 22면).

동구권 제국: 스웨덴(1984년), 헝가리, 체코, 불가리아, 유고슬라비아 등 인공수정자법을 시행. 가족법전 속에 수용하고 있음이 특징. AID의 경우 夫의 서면 동의를 요하고 있음.

- 체코가족법(1982년, 제58조 2항): 시험관수정(IVF)에 대해서도 적용

○ 인공출산기술의 지침:

- i) 인공수정은 부부의 요구에 따라 의료행위로서 관리된다.
- ii) 인공수정의 청구는 부부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iii) 인공수정은 夫의 불임, 해부학상의 결함, 유전병의 위험 등 건강상의 원인이 있을 때에만 행할 수 있으며, 35세 이하의 여성에게만 인공수정시에

이 허용된다.

iv) 정자는 夫 또는 제3자로부터 받아 사용할 수 있다.

v) 제3자로부터 정자를 받는 경우 그 제3자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고 유전병이 없어야 하며 40세를 넘어서는 안된다.

vi) AID의 경우 인공수정에 관계된 모든 사항은 비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vii) 인공수정신청자는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정자제공자는 그의 요구에 따라 상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viii) IVF나 ET는 지금까지 夫의 정자와 처의 난자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제3자가 증여한 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를 낳은 여자가 법률상의 母이다.

프랑스: 『인간개조금지법안』(94.1.21일 상원 통과)

○ 인공수정은 결혼했거나 2년 이상 동거한 가임기의 생존 남녀로 임신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시술될 수 있다.

; 레즈비언 커플이나 폐경기 이후 여성은 인공수정 시술을 받을 수 없으며, 여자가 죽은 남편의 정자를 이용해 임신하는 것도 금지, 인공수정이 제한되는 특정한 연령을 명시하지는 않음: 여성의 폐경기에 개인차가 있고, 남성의 경우도 생식능력에 자연적인 연령제한이 없는 점을 고려

○ 여러 남성의 「우수한」형질을 아기에게 집중적으로 부여하기 위해 여러 남성의 정자를 혼합하는 방식도 금지

○ 유전자 조작을 통한 인간개조행위 금지

(동아 94. 1.25., 7면; 경향 94. 1.25., 5면).

일본: 관련법규는 없으나, 현행법을 확대해석하여 비부부간 인공수정을 할 때는 가족계획상담소로 하여금 부부를 불러내 남편의 의향을 충분히 확인한 뒤 의사 앞에서 서명·날인하고 호적등본을 제출토록 하고 있음. 또 비배우자간 인공수정 때에는 정액제공자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유전질환이 없는 사람을 엄선하는 것은 불문율처럼 되어 있음.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주 크레모나 지방법원의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판결「아

내가 타인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낳은 아이는 친자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아내측이 제기한 양육비 및 위자료청구소송은 기각. - 이태리 현행법은 생물학적 혈연관계가 없는 경우 친권부정을 인정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여성과 아이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는 비판과 함께 「인공수정아 보호법」을 하루 빨리 제정해야 한다는 등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세계 94. 3. 3., 11면).

- 1984년 미국불임학회 윤리기준

- 남자·정자·수정란은 제공자의 소유물이다.
- 제공자는 자기의 재량에 따른 처분권을 가짐을 명확히 한다.
- 수정란의 동결보존에 있어서 모체내에 되돌려지기 위해서 난제공자의 임신 가능기간동안은 보존할 수 있어야 한다.
- 익명성이 보장되면 수정란을 다른 불임부부에 제공하는 것도 용인된다.

- 수정란의 법적 성격을 인정하는 최초의 법제는 1981년 미국 일리노이주법 (Ill. Rev. Stat. ch.38, §81-26(7)(1981)임: IVF 를 실시하는 의사는 卵의 'Care and Custody' 책무를 지우고 있고 卵에 위해를 가한 경우 1977년에 제정된 同州의 아동학대방지법의 형벌 제재를 받게 됨.

< Donor를 익명으로 하는 문제 >

- 서독에서는 자가 16세에 달한 후 열람청구가 있을 때에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유력한 견해임(In-vitro-Fertilisation, Genomanalyse und Genterapie, 1985, S.17 참조: 양수산 전개논문 253면에서 재인용).

- 한국: 1985년 한국산부인과학회의 「체외수정윤리강령」 제정, 법률적 부부 사이에만 시술하도록 규정, 이후 대한의학협회 제정의 「인공수태 윤리에 관한 선언」(1993. 5. 6)이 상세한 지침을 통하여 자율적 통제를 행하고 있다.

의료법 제53조 1항에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1-3개월)을 내릴 수 있도록 한 포괄적 조항과 산부인과학 교과서 (NOVAK)에 「사전검사행위를 의사의 준수사항」으로 기술하고 있을 뿐 인공체외시술과 관련된 법적 장치가 거의 없는 상태임.

- 인공수정 관련 입법례 사항별 요약 -

1. 관련 법령명

스웨덴: 인공수정법(85), 독일: 체외수정란보호법(90), 미국: 통일친자법(73), 각주의 인공수정법, 영국: 수태 및 수정란보호법(90), 대리모조정법(85), 체코: 가족법(82)

2. 사항별 (스: 스웨덴, 독: 독일, 미: 미국, 영:영국, 체: 체코, 프:프랑스)

1) 시술기관·의사의 기준

스: AID는 반드시 국공립병원에서만 실시, 다른 산부인과전문의의 입회 의무화

독: 지정된 국공립병원에서만 시술

미: 자격있는 의사

비고: 영국, 일본은 제한 없음. 체코등의 동유럽국가는 가족법에서 친자법적 사항만 규정,

2) 의뢰부부의 적격성, 시술결정

스: 시술의사가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하여 시술부부의 적격성 판단,결정

독: 법률적 부부에 한함

영: 인공수정자의 복지 고려, 산모의 나이 제한 없음

체: 35세 이하의 여성

프: 결혼했거나 2년이상 동거한 가임기의 생존남녀

3) 남편의 동의

스: 사전 서면 동의

미: 사전 서면 동의

체: 사전 서면 동의

4) 기록보관 등

스: 70년간 보관

미: 연4회 보건당국에 시술사항을 보고

5) 유전자조작 등

독: 연구를 병자한 체외수정란의 이용금지, 유전자조작 금지

미: 14일 이상 수정란 실험 금지(수정학회 규정)

프: 유전자조작을 통한 인간개조금지

6) 대리모계약

스: 상습적, 영리목적의 인공수정 금지, 처벌

영: 금전거래를 통한 대리모계약 금지

7) 비밀유지

미: 법원의 명령으로 의뢰부부 동의서 열람

8) 정자제공자의 요건

체코: 40세미만, 신체검사 요, 유전병이 없을 것.

9) 기타

체내수정만 인정(스웨덴), 피시술자의 정자선택권 부정(스웨덴)

정자제공자의 요구에 따라 상당한 보수지급(체코),

친생자부정: 생물학적 혈연관계가 없는 경우로 민법에 규정(이탈리아)

제 2 편

최근입법의견 동향 및 최신법령소개

I. 1994년 정부입법예정 149개 법안관련 입법의견

1. 1994년 정부입법예정 149개 법안관련 입법의견목록

(1994.2.11.~1994.4.10)

◎경제기획원	6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의견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의견	
◎내무부	62
○도로교통법 개정의견	
○지방세법 개정의견	
◎재무부	62
○관세법 개정의견	
○보험업법 개정안	
○상속세법 개정의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개정의견	
◎법무부	63
○범죄자보호선도법(가칭) 제정의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개정의견	
○상법 개정시안	
○행형법 개정안	
◎교육부	65
○교육법시행령 개정의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의견	

- 학교용지확보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개정의견

◎농림수산부 65

- 농지법(가칭) 제정의견

◎상공자원부 66

- 도·소매업진흥법 개정의견
- 산업기술대학법(가칭) 제정안
- 수출보험법 개정의견

◎건설부 66

- 건축법시행규칙 개정안

◎교통부 67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의견
- 항만법시행령 개정의견
-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

◎과학기술처 68

- 기초과학연구진흥법 개정의견
- 유전공학육성법 개정의견
-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의견
- 해양과학조사법(가칭) 제정의견

◎국회계류법안 69

-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의견
- 사회간접시설확충을위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제정안
- 소비자보호법 개정의견

2. 1994년 정부입법예정 149개 법안관련 입법의견요지

(1994.2.11.~1994.4.10)

◎경제기획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제품의 광고효과를 사업자가 사전에 객관성있는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검증을 거쳐 이를 해당기관에 제출한 뒤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광고할 수 있도록 '광고 실증 명령제'를 도입함(소비자보호원).

: 조선 94.2.18.,21면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제조업자가 자기 상품의 소매가격 범위를 미리 정해 도소매업자들을 통제하는 행위를 일부 상품에 대해 내년부터 허용하고 약품의 경우 제약회사가 표준소매가를 정해놓고(유사 재판매가격) 10% 이상은 할인해주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와 저작물(책)의 경우 정가를 정해놓고(법정 재판매가격)할인이 가능해도 정가를 고수하도록 하는 행위 등 가격결정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함. 제조업자가 일정가격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유통업자를 통제하는 최고 재판매가격은 허용하되 일정가격 이하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최저 재판매가격은 일단 허용하지 않음(공정거래위원회).
- 현행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 금지조항은 업계의 가격담합 등을 규제하는 데 효과를 거두었으나 일부 부작용도 있으므로 국제화 개방화 속에서 다양한 판매전략을 통해 유통효율을 제고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예외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생산자가 다음 단계 공급자에게 일정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하는 최저판매가격 유지를 금지하는 것은 소규모 기업, 신규진입 기업, 새제품 도입 기업 등이 기존의 강력한 상표에 맞서 경쟁할 수 있는 효율적 수단을 제한하고 있음(신광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 동아 94.3.19.,11면; 한겨레 94.3.19.,7면

◎ 내무부

○도로교통법 개정의견

-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도 누구든 조건없이 2종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특히 보청기를 착용해 55dB 이하의 청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는 1종면허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함(행정쇄신위원회).

: 동아 94.4.4., 2면

○지방세법 개정의견

-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가자치단체, 종교단체, 학교, 사회복지시설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지방세를 과세하고 각종 공사와 공단 및 의료사업 등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감면혜택을 전면 폐지키로 함. 자치단체 기초세목인 재산세, 종토세, 주민세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을 감면세목에서 제외하고 감면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취득세, 등록세 등 1회 납부세목에 한정해 감면의 폭을 최소화하기로 함(내무부).

- 과표현실화를 위해서 ①96년의 과표현실화율을 공시지가대비 50~70%로 설정하고, ②실효세율을 93년(0.08%)수준의 2배로 끌어올리며, ③비과세·감면대상토지를 대폭 정비함. 과표가 매년 인상되는데 따른 1가구 1주택 소유자 등 일반서민 및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규모 이하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세율을 낮춰 세금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함(경제기획원).

: 동아 94.3.24., 11면; 동아 94.4.6., 2면

◎ 재무부

○관세법 개정의견

- 타주 공급구역의 시군별 제한제도와 신규 제조 및 판매 면허금지 조치를 폐지토록 하고 수출입 물동량증가에 맞춰 통관법인의 설립이나 영업범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관세사 시험제도를 개선해 통관업의 경쟁을 촉진토록 함(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보험업법 개정안

- 보험업의 투자 및 사업영역을 보험의 모집 및 인수를 통해 축적된 자금을 운용하는 사업으로 규정함으로써 현행보다 범위를 넓히고 현재 상해보험뿐만 생·손보 겸업 업무를 질병·노후대책·의료비보장보험 등으로 확대하며 영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모집인이나 대리점 말고도 보험모집을 도운 사람·보험소개자 등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모집인 등록자격도 철폐하여 미성년자도 모집인이 될 수 있게 하며 자산운용을 원활히 하도록 총 자산의 5%인 동일회사 투자한도는 7%, 3%인 대출 한도는 5%로 높임(재무부).

○상속세법 개정의견

-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현재의 '유산과세형' 「상속세법」을 상속인이 유산을 물려받은 다음에 세금을 물리는 '유산취득과세형'으로 개편함(재무부).
- 차명거래를 줄이기 위해 명의자 과세제도 도입 및 증여세 부과 등의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중임(홍재형 재무부장관).
- : 한국 94.2.14., 1면; 서울 94.3.10., 10면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개정의견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는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산 경우 1년간은 유희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시행규칙은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큰 경우에만 유희토지에서 제외,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됨(대법원 전원합의부판결).
- : 한국 94.3.23., 30면

◎ 법무부

○범죄자보호선도법(가칭) 제정의견

- 가석방된 사람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때만 인정해온 보호관찰정지제도를 앞으로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석방자 등 모든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확대하는 등의 내용의 「범죄자보호선도법(가칭)」을 제정함(법무부).
- : 한겨레 94.3.23., 2면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세관 공무원에게 외환사범·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수사권을, 체신공무원에게 무선설비·정보기기의 불법사용자에 대한 수사권을 각각 부여하도록 함(법무부).

: 동아 94.3.16.,11면

○상법 개정시안

- ①기업설립 및 운영절차를 간편화하여 경제활성화와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해 발기인 숫자축소와 함께 발기인만이 건물·기계등의 현물출자를 할 수 있는 제한규정을 삭제, 창립주주도 현물출자를 할 수 있고, ②기업의 기업비용과 신제품·신기술등의 연구개발비를 장기적으로 기업에 이익을 가져오는 이연자산으로 대차대조표에 처리할 수 있으며, ③사무자동화 확산에 맞춰 법정서류의 보관비용과 공간을 크게 줄일 수 있도록 현재 10년간 보관하도록 되어있는 기업의 회계장부, 대차대조표등 각종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마이크로필름·컴퓨터 디스켓등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④「상법」상 기명날인을 의무화하고 있는 모든 서류의 작성을 서명으로도 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고, ⑤소수주주 및 반대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들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허용하여 현재 주주가 기업경영에 불만이 있더라도 특별한 대항수단이 없었으나 경영방침에 반대하는 주주는 기업에 자신소유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기업은 두달안에 적정가격으로 매수하도록 의무화함(법무부).

: 한국 94.3.23.,9면

○행형법 개정안

-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의 경우 앞으로 변호인 접견 때 교도관이 입회해 접견내용을 듣는 것을 금지하기로 하고, 재소자의 경우 친족과 변호인 이외의 사람들과도 접견과 서신교환을 원칙적으로 전면허용하며 현행 재소자에 대한 징벌 가운데 식사량을 줄이는 감식법과 작업 및 운동금지 조항을 없애기로 하고 최고 3개월로 돼 있는 도서열독금지 처벌기간을 1개월로 단축함(법무부).

: 한겨레 94.3.23.,2면

◎ 교육부

○교육법시행령 개정의견

- 특수재능아를 조기에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들 영재아들에게 대학 입시 때 특전을 주는 과목별 속진제를 97년부터 도입할 방침임(교육부).
- : 한겨레 94.4.2.,14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의견

- 내국세 총액의 11.8%를 지방교육재정으로 넘기도록 한 교부금법을 고쳐 교부율을 95년 13.0%, 96년 13.6%, 97년 14.2%, 98년 15.0%로 상향조정하고 지자체의 중등교원 봉급전입금 부담을 늘려 서울은 100%, 직할시와 도는 50%를 부담하도록 규정함(교육부).
- : 국민 94.3.23.,9면

○ 학교용지확보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시장과 도지사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학교신설에 필요한 용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책임을 지우며, 대신 교육감이 갖고 있는 학교설폐권을 지자체장에게 넘겨 교육에 대한 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함(교육부).
- : 국민 94.3.23.,9면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원장과 강사의 자격을 한국교사자격증, 사회교육 전문인 자격증, 강사 자격증 등의 소지자로 제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학원은 사회교육법인화를 추진해 학원도 사회교육기관으로서 위상 정립이 이뤄지도록 해야함(송석호 한국학원총연합회 UR대책위원장).

◎ 농림수산부

○농지법(가칭) 제정의견

- 93년 12월 농지에 대한 양도세감면 종합한도제를 도입,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더라도 연간 양도세추정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물리고 있으나 UR협상 타결후 농업경쟁력 강화차원에서 「도시자본에 대한

농지소유 허용」, 「영세농 이농촉진」등으로 영농의 대규모화를 추진하는 신농정 방향에 역행하고 있음(국민일보 해설).

: 국민 94.2.22.,6면

◎ 상공자원부

○도·소매업진흥법 개정의견

- 연례적 농수산물 가격파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수산물 유통체계를 개선, 개별입찰로 유통되어 중간업자의 공급조절 여지가 많았던 수입 농산물에 대해 올 하반기부터 공영도매시장 상장을 통한 유통을 의무화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관리하는 20여개 지방도매시장의 운영이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되어 농산물유통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함(경제기획원).

: 국민 94.2.25.,6면

○산업기술대학법(가칭) 제정안

- 95년부터 기술대학이 개교해 고급산업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대학법(가칭)」을 마련하여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산업기술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대학 학생은 공고생 위주로 증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함(김철수 상공자원부장관).

: 한겨레 94.4.1.,7면

○수출보험법 개정의견

- 직접적인 수출지원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간접 수출지원 수단인 수출보험의 역할이 늘어날 수 있도록 수출보험공사의 자율성을 키우도록 함(상공자원부).

: 한겨레 94.3.12.,7면

◎ 건설부

○건축법시행규칙 개정안

- 실평수 25.7평이하의 단독주택이나 30.2평이하의 농가주택 및 60.5평미만의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등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는 지금까지는 32종의 각종 민원서류를 첨부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고 도시계획변경등으로 해당지구의 용도에 맞지않는 도시형 공장은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다른 도시형 공장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으며 1만m²이상이거나 16층이상인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할 경우 현행 「건축법」을 개정한 지난 79년 이전에 건축한 건물에 대해서는 주위에 3m이상의 피난통로를 확보하지 않아도 증축이나 용도변경할 수 있음(건설부).

: 한겨레 94.4.7., 7면

◎ 교통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의견

- 관광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해 해외여행에 나서는 내국인에 대해 항공·선박권 구입시 1인당 미화 30달러(한화 약2만4천원)를, 국내 관광호텔에 투숙하는 내국인에 대해 숙박요금의 2%를 각각 관광진흥기금으로 걷도록 함(교통부).

: 경향 94.4.5., 22면.

○항만법시행령 개정의견

- 증가추세에 있는 해상수송 수요에 대비, 영종도 신공항 인근에 건설되는 영종항 등 4개 항을 무역항으로, 제주, 추자항 등 4개 항을 연안항으로 추가지정함. 무역항 지정대상으로는 ①영일만 신항개발 예정지, ②보령지역 신항 개발예정지, ③영종도 신공항 인근에 건설되는 영종항, ④제주 중문단지내 마리나항 등을, 연안항으로는 ①제주, 추자항, 애월항, 성산포항, ②울릉도의 사동항을 검토중임(해운항만청).

: 동아 94.3.2., 11면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

- 부산항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95년초부터 부산항 각 부두의 선적배정, 하역, 관리등 부두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민간업체로 이양함과 함께 업체의 자의적 부두운영으로 불공정행포를 일삼을 가능성을 배제키 위해 모든 선사

차별없이 부두이용권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도 마련하고자 함(부산지방해운항만청).

: 세계 94.3.6.,1면

◎ 과학기술처

○ 기초과학연구진흥법 개정의견

- 기초과학연구정책심의회를 종합과학기술심의회에 통합하고 정부의 기초과학 연구활동 지원사업을 한국과학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 함(과학기술처).

: 국민 94.2.14.,10면

○ 유전공학육성법 개정의견

- 유전공학을 생명공학으로 개칭하고 국가차원의 생명공학육성체제와 관련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부처의 역할을 확대시키는 한편, 92년6월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의 발효에 대비하여 관련내용을 보완 정비함(과학기술처).

: 국민 94.2.14.,10면

○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의견

-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장기발전방향에 따라 명칭을 한국과학원으로 바꾸고 명예박사학위 수여제도를 도입함(과학기술처).

: 국민 94.2.14.,10면

○ 해양과학조사법(가칭) 제정의견

- 「해양과학조사법(가칭)」은 오는 11월 16일 발효예정인 「유엔해양법협약」에 대비하기 위해 외국 및 권한이 있는 국제조직이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과학 조사활동을 수행하게 될 경우의 허가 및 규제절차를 정하고 내국인에 의해 수행되는 해양과학조사활동의 결과를 취합, 이용 보급할 수 있는 해양정보유통체제의 구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과학기술처).

: 국민 94.2.14.,10면

◎ 국회계류법안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의견

- UR협상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농업용수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능이 중복되는 농업지원기구를 축소한다는 방침에 따라 농지개량조합을 농어촌진흥공사에 흡수통합하고 현 농지개량조합 직원은 신설되는 지방공기업 직원으로 모두 편입시키며 신설 공기업 책임자는 군수가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함 (민자당).

: 동아 94.4.4., 2면

○사회간접시설확충을위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제정안

- 대상사업과 투자범위·투자방법·투자조건·민자유치 지원방안등을 마련하고 경제기획원에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 민자유치 관련사항을 심의하며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토지매입과 손실보상, 이주대책등은 주무관청이 위탁 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지전용부담금 및 조세등을 감면해 줌(정부).

: 서울 94.2.15., 2면

○소비자보호법 개정의견

- 물건이나 용역의 품질 및 가격, 판매방법, 대금지급등 계약에 관한 피해를 봤으나 소비자 스스로 소송을 제기하기가 곤란하고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사업자가 거부한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소송비용을 대납하고 회원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대리해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함(소비자보호원).

: 국민 94.2.22., 10면

Ⅱ. 최근입법의견 동향

○ 분류기준표

분 야	대한민국헌행법령집해당항목
憲 政	제1권1헌법, 2국회, 제2권3선거·정당
統一·外交·國防	제14권13군사(1), 제15권13군사(2), 14병무, 15국가보훈, 제47권44외무, 45조약(1), 제48권45조약(2), 제49권45조약(3)
內務·地方行政	제3권4행정일반, 제4권5국가공무원, 제10권10지방제도(1), 제11권10지방제도(2), 제12권11경찰, 제13권12민방위·소방
社會·文化·教育	제16권16교육·학술(1), 제17권17교육·학술(2), 제18권17문화·공보, 제38권38사회복지, 제40권40노동(1), 제41권40노동(2)
産 業·經 濟	제20권19재정·경제일반(1), 제21권19재정·경제일반(2), 제22권20내국세(1), 제23권20내국세(2), 제24권21관세, 22담배·인삼, 제25권23통화·국책·금융, 제30권28상업·무역·공업, 제31권29공업규격·계량, 30공업소유권, 제32권31에너지이용·광업, 제33권32전기·가스
農 林·水 産	제26권24농업(1), 제27권24농업(2), 제28권25축산, 26산림, 제29권27수산
建 設	제34권33국토개발·도시, 제35권34주택·건축·도로, 제36권35수자원·토지·건설업
科學技術·交通·遞信	제19권18과학·기술, 제42권41육운·항공·관광(1), 제43권41육운·항공·관광(2), 제44권42해운(1), 제45권42해운(2), 제46권43체신
環 境·保 健	제37권36공중위생·의사, 제38권37약사, 제39권39환경
法 院·法 務	제5권6법원, 제6권7법무, 제7권8민사법(1), 제8권민사법(2), 제9권9형사법

1. 최근입법의견목록

(1994.2.11. ~ 1994.4.10)

- ◎憲政 76
 - 국회법 개정의견
 - 로비의제도화관련 입법의견
 - 입법예고제관련 입법의견
 - 정치관계법관련 입법의견
 - 통합선거법 개정의견

- ◎統一·外交·國防 80
 - 6.25민간인전쟁피해자특별원호법(가칭) 제정의견
 - 병역법시행령 개정안
 - 외무공무원법 개정의견
 - 이산가족신분법(가칭) 시안

- ◎內務·地方行政 81
 - 경찰법 개정안
 - 소방법 개정의견
 - 신용정보관리법(가칭) 제정의견
 - 정부조직법 개정의견
 - 지방자치법 개정의견

- ◎社會·文化·教育 83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정의견
 - 공동모금법(가칭) 제정의견
 - 교육개혁관련 입법의견
 - 교육관계법 개정의견

- 교육기본법(가칭) 제정의견
- 교육법시행령 개정의견
- 교육·입시제도관련 입법의견
- 교육재원확보관련 입법의견
- 교회재산보호법(가칭) 제정의견
- 근로기준법시행령 개정의견
- 기금교수제관련 입법의견
- 노동관계법 개정의견
- 민간복지자원육성법(가칭) 시안
- 방송법 개정의견
- 사립학교법 개정의견
- 사회복지사업기금법 개정의견
- 소극장규제관련법 개정의견
- 영화법 개정의견
-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의견
- 종교법(가칭) 제정의견
- 종교법인법(가칭) 제정의견
- 학교보건법 개정의견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의견

◎産業·經濟 93

- OUR관련 입법의견
- 경제기획원직제개편에 관한 입법의견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의견
- 국가표준기본법(가칭) 및 동법 시행령 제정의견
-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의견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명령제4조의시행에관한규정안관련 입법의견
- 금융실명제에거래및비밀보장관한긴급재정명령제4조의시행에관한규칙 개정의견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의견
- 보조금제도 개편관련 입법의견

- 산업표준화법 개정의견
- 소득세법 개정의견
-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의견
-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의견
- 유통단지개발촉진법(가칭) 제정안
- 증권거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 지적재산권관련 입법의견
- 특별소비세법 개정의견
- 특허심판제도관련 입법의견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안

◎農林·水産 102

- 농어업재해대책법관련 입법의견
- 농업과학기술원설립관련 입법의견
- 농업협동조합법관련 입법의견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의견
-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의견

◎建設 107

- 건설기본법(가칭) 제정의견
- 골재채취법 개정의견
- 공동주택관리령 개정안
-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의견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의견
- 지하수법 개정의견

◎科學技術·交通·遞信 110

- 관광진흥법 개정안
- 통신기밀보호법시행령(가칭) 제정의견

◎環境・保健 110

- OGR관련 입법의견
- 구강보건법(가칭) 제정의견
- 노인복지법시행령 개정의견
-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 개정안
- 식품위생법 개정의견
- 유전자은행설립에관한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의료법시행령 개정의견
- 장기매매관련 입법의견

◎法院・法務 113

- 국가보안법 폐지의견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개정의견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사법제도개혁관련 입법의견
- 사생활보호법(가칭) 제정의견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별법(가칭) 입법의견
- 인권관련 입법의견
- 호적법 개정의견
- 형사소송법 개정시안

2. 최근입법의견요지

(1994.2.11. ~ 1994.4.10)

◎憲政

○국회법 개정의견

-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시민단체가 깊이있게 감시·평가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으므로 「정보공개법(가칭)」 제정, 상임위 공개, 입법공청회와 청문회 상례화로 시민들의 입법과정 참여를 보장하여 국회감시기능을 강화함(김성남변호사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 총선이나 대선 날짜를 못박은 것처럼 회기를 못박아 임시국회에서 무리하게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어수영 이화여대교수).
- 본회의를 TV공개하여 의원의 자질을 높이고, 미국처럼 한 의원이 두 개 이상의 상임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여 상임위나 국회 조직에서도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 보좌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며 정부과건의 상임위 전문위원을 여야 공동 추천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 입법조사국을 입법국과 조사국으로 분리해 내실을 기함. 국회에서의 투표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공개투표에 의하나 정당제도를 택한만큼 원칙과 관련된 것은 당론에 따르고 나머지는 의원 자유에 맡기며 중요한 것은 인사투표도 공개 및 크로스보팅이 보장돼야 함(손세일 민주당의원).
- 의원의 본회의 발언기회 대폭확대 및 대정부질문제도 개선, 정보위신설 및 상임위재편, 예결위 조기구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상임위활성화, 국회입법기능 강화를 위한 국회사무처 개편, 국가중요비밀문건의 관리체계확립등 국회제도를 개선함(민자당).
- ①행정위는 총리실외에 경제기획원을 소관으로 하고, 과학기술처를 교육과 묶어 과학교육위원회를 만들며, 환경과 노동을 합해 노동환경위원회로 하고, ②예결위를 상설화시키고 정기국회 개회와 동시에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하며 입법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법부 연수원을 설립하고 국회사무처내에

법제 예산분석 입법조사기능을 전담하는 독립적 성격의 기구를 설치하며, ③인사청문회제도 도입, 의원입법활동비의 상향조정 및 입법보좌관을 증원함(이한동 국회운영위원장).

- 자유토론이나 소수의견의 존중, 다수결의 원칙, 국회의원 개개인의 정치활동 보장 등 의회정치와 기본원리와 원칙을 수용하여 국회다운 국회를 만들어야 함(세계일보 해설).
- 야당의 고질적인 국회개원 흥정과 여당의 임시국회 소집거부, 의안의 졸속 변칙처리등을 청산하고 현안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국회의 상설화가 필요함. 또 질문시간을 단축하고 질문자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대정부 질문제도의 효율화를 꾀하고 비회기중에도 상임위의 활동을 보장, 각종 국정현안을 언제라도 다룰 수 있는 국정심의기관의 역할을 하도록 하며 상임위별 1명인 전문위원수를 복수화, 전문화하여 입법기능을 제고하는 등 국회사무처의 기능을 강화함(서울신문 해설).

: 세계 94. 2.14., 8면; 경향 94. 3.14., 9면; 국민 94. 3. 8., 3면; 세계 94. 3. 9., 3면; 서울 94. 3. 9., 3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6호(66면) · 제8호(64면) · 제9호(85~86면) · 제11호(66면) · 제94-1호(48면) 참조

○로비의제도화관련 입법의견

- 이익집단들의 조직화된 요구분출 급증으로 이를 수렴,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이해당사자의 관련상위 배제, 별도입법을 통한 로비행위의 규제, 각 상위와 이익집단간의 정책토론 제도화, 소위원회 공개 및 회의록 작성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함(국회제도개선위원회).
- 정치자금의 비공식루트를 차단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로비에 관한 한계를 정하고 로비자금도 합법화 시키는 등 우리 실정에 맞는 「로비법(가칭)」을 제정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함(김영래 아주대교수).
-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로비를 막고, 각 이익집단의 목표가 공개적으로 토론·여과될 수 있는 장치인 「로비스트법(가칭)」 제정은 의원의 정치적 책임성제고와 의정활동 공개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임(선우종원변호사, 전국회사무총장).
- 대부분의 국가들이 본회의 공개에 그치고 소위원회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국회 회의광경을 TV공개하여 국민들의 의정활동 평가 폭을 넓히고, 지역이 작고 집단간 이익상충이 미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환경에서 로비양성화는 실정에 맞지 않음(강정구 국회입법조사국장).

: 세계 94. 2.14., 8면

○입법예고제관련 입법의견

- 국회에는 전문가보다 훨씬 많은 비전문가들이 법률안을 심사·의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안의 입안, 제출, 심사, 의결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만 설득력 있는 법률이 제·개정될 수 있을 것이므로 현행 '입법예고제'를 강화해야 하고, 행정부제출 법률안과 행정입법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 제도를 의원입법까지 포함하여 모든 법률안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해 의견서 제출이나 입법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법률안 심사단계에서 현재 상임위원회 중심 비공개원칙을 탈피해 입법공청회를 상례화하여 국민참여의 길을 넓히고 본회의 기능을 강화함(정종섭 헌법재판소연구관).

: 세계 94. 2.14., 8면

○정치관계법관련 입법의견

- 정치개혁입법의 실천·정착을 위해 정치인이나 일반국민의 의식과 관행의 변화가 필요하고, 국회법·정당법과 같은 정치관계법의 추가정비가 요구됨(김석준 이화여대교수, 『깨끗한 정치,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 정사협개최 토론회』).

- 조직의 취약점과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시민단체들의 시민운동활성화를 위하여 ①관변단체육성특별법 조속 폐지와 시민단체에 대한 사업별 재정지원, ②공명선거캠페인을 위한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의 폐지, ③각 사회집단들이 자신의 주장을 안정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 ④시민단체와 일반국민의 효과적 행정감시활동을 위한 행정정보공개법 제정이 필수적임(유재간 변호사, 경실련 『교통광장』대표).

- 통합선거법은 사조직강화와 정당정치 증발, 인물중심의 투표양식을 초래할 역기능이 우려되지만 정치개혁의 실천방안으로 시민단체의 다원화를 통한 감시기능 제고, 공무원 내부고발자보호법 제정, 선관위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위·구성양식 개선이 있어야 함(박재창 숙명여대교수).

- 정치개혁법이 돈 안쓰는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확고하게 만든 것은 환영할만하지만 여성계가 줄곧 요구해온 여성 공천 할당제와 중선거구제 도입 등을 도의시한 것은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도 채 안되는 현실을 개선할 뜻이 없음을 드러낸 것임(신낙균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
- 여성의 의회진출에 대한 제도적 장치 없이 여성 의원 비율이 늘어난 나라는 없고 70년대부터 비례대표제를 실시해 여성의 의회진출률이 30%를 웃도는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 유럽 나라들처럼 우리도 여성 할당제 도입에 눈을 돌려야 함(이우정 민주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에서 선거구 조정문제를 논의하도록 함은 지방의원의 선거구조정권을 국회가 행사하는 것이 되어 앞뒤가 맞지않고 위원회구성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음(동아일보 해설).
- 5억원 미만의 지정기탁금의 기탁자를 공개하지 않는 「정치자금법」 개정법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법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동아일보 해설).
- 무보수 명예직을 전제로 대폭 늘려놓은 지방의원의 숫자는 줄이지 않고 월정액의 의정활동비를 주기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법은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줄 것이고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의 신분을 지방공무원으로 하면서도 내년에 선출되는 시장, 군수의 임기에 한해 국가공무원으로 규정함과 같은 신분차이는 임명권자의 차이를 가져오게 하며 대통령령으로 15개 시도에 2명의 부단체장을 둘 수 있도록 한 것도 어느 시도에 부단체장 2명을 둘 것인지를 정할 것인지 그 기준이 문제임(동아일보 해설).

: 한겨레 94. 3.10., 10면; 동아 94. 3. 9., 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6호(68면) · 제9호(86면) 참조

○통합선거법 개정의견

- 여론조사를 공표하지 않아도 ‘당선확실’, ‘백중세’, ‘당선가능성 희박’ 등의 수사를 사용해 판세를 보도하고 정치권은 교묘한 누설로 이같은 언론보도를 부추기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위해서 후보자·정당·정견 및 정강정책에 대한 지지도 등 3요소를 고루 갖춘 입체적이고 분석적인 자료를 토대로 한 여론조사보도는 합리적인 투표행위를 위해 필요함. 이러한 여론조사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신뢰성과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나 언론인, 정치인, 일반인을 망라하는

기구를 만들어 여론조사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함(오택섭 고려대학교수·신문방송학).

: 한국 94. 3. 2., 19면

◎統一·外交·國防

○6.25민간인전쟁피해자특별원호법(가칭) 제정의견

- 독일, 일본 등은 오래전부터 법을 제정하여 연금을 지불하고 있는 바 긴 세월을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자들을 위해서 법제정을 건의함.

: 법제처 입법의견신고센터에 접수된 입법의견.

○병역법시행령 개정안

- 군복무를 마친 30세이하의 사람이 해외여행을 할 경우 첫 출국시에만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국회여행신고서를 제출케 하고 여권유효기간내 재출국시에는 공항이나 항만의 병무청 출·귀국신고사무소에 출국당일 재출국신고서만 내면 되도록 함(병무청).

: 한국 94. 3. 1., 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8호(70~71면)·제12호(73면)·제13호(53면) 참조

○외무공무원법 개정의견

- 자치단체장이 국가경쟁력강화를 전담하는 별도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직대사등 퇴직한 재외공관장을 시·도지사의 대외담당 보좌역으로 기용할 수 있도록 함(당정).

: 세계 94. 4. 4., 2면

○이산가족신분법(가칭) 시안

- 남북교류확대와 통일이후 이산가족 신분확인 및 증명 상속 등에 필요한 이산부부가 분단으로 헤어진뒤 따로 결혼했을 경우 후혼의 효력을 인정하는 방안, 실종 및 부재신고후 생존이 확인됐을때 이미 상속된 일부재산을 분할기로 하는 방안등 통일이후 가족법에 필요한 각종 법률이 포함되는 특례법 시안을 마련함(법무부).

: 세계 94. 3. 9., 22면

◎內務·地方行政

○경찰법 개정안

- 경찰조직의 이원화는 아직 시기상조로서 지방자치제의 정착정도를 보아가며 신중히 연구할 문제임(민자당).
- 완전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이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대공·마약·테러·통신·교육·감식과 같은 업무는 국가경찰이 맡고 방범·교통·수사 등 일반치안은 지방경찰이 맡되, 양자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함. 중앙의 국가경찰위원회와는 별도로 시도에 지방경찰위원회를 두고 그 산하에 지방경찰청을 두도록 하며 지방경찰위원회위원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도지사가 임명토록 함(민주당).

: 동아 94. 2.14., 2면

○소방법 개정의견

- 화재로 전국적인 통신망 마비사태를 몰고 온 광케이블 통신구를 비롯하여 송유관, 지하가스관, 전력케이블 등 국가의 중추 시설들이 「소방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초고층 건물이나 가스저장소, 대형 공장 등은 법적용을 받고 있으나 건물의 높이나 시설물 특성에 따른 별도의 소방설비기준이 없이 일반 건물과 똑같이 취급하고 있어서 역시 소방대책의 취약지가 되므로 초고층건물과 대형공장의 경우 산업설비 및 공정별, 건물높이별로 소방설비기준을 세분해야 함(내무부).
- 산업발전상황을 고려한 「소방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함(김병효 현대방재연구소 소장).

: 조선 94. 3.15., 31면

○신용정보관리법(가칭) 제정의견

- 개인이나 기업 등에 대한 신용도를 조사·배포·이용하는 신용정보업을 보호·육성함으로써 신용정보의 정상적인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불법사용으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침해행위를 규제함. 「신용정보관리법(가칭)」이 제정되면 관할당국이 경찰청에서 재무부로 바뀌고 기존의 「신용조사업법」은 폐지되며 관

할대상기관들도 신용정보사업자는 물론 은행·단자·증권·보험 등 금융기관과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백화점등 신용정보를 체계적으로 취급하는 업계가 모두 포함됨(재무부).

: 서울 94. 3.15.,9면

○정부조직법 개정의견

- 부처 통·폐합에 대한 총괄 조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개편의 기준은 민주도, 국제우선의 원칙에 얼마나 부합하느냐 하는 각도에서 정하고 부처 내부의 문제아닌 부처간 관계 재조정이 있어야 함(박동서 행정쇄신위원회 위원장).

: 서울 94. 4. 1.,18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0호(77~78면)·제12호(76면)·제13호(57면) 참조

○지방자치법 개정의견

- ①지방의회 활성화 방안으로 지방의회가 기본법률이나 명확한 권한의 한계를 일탈할 때는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결정에 재심을 요구하는 '재의요구권'을 강력히 발휘해서 형평을 맞춰야 하고, 의회와 집행부의 대립으로 행정의 마비될 경우 단체장이 긴급히 필요한 사항을 사전집행한뒤 사후에 의회승인을 얻는 '선결처분권'도 행사해야 할 것임, ②지방의회 감사에 있어 증언거부나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 유무에 있어서 국가전체의 법체계에 맞춰 증인의 불출석이나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을 조례로 정할 때 어떤 면에서는 주민 이익을 위해 만드는 조례가 주민 인권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자치의 체계화, 생활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규정을 공무원 외에 주민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무리임(최기선 인천시장).

- ①단체장에게 선결처분권을 주되 사후에 의회 동의를 못 얻으면 정치적 책임을 묻는 장치가 있어야 힘의 균형이 이뤄지고, ②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법원에서 구인장까지 발급하는 미국의 경우와 같은 권한을 보장함이 없는 지방의회 감사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처벌규정을 조례로 정하거나 특별법을 만들기보다 「지방자치법」을 보완함이 바람직함(정세욱 현대사회연구소장).

-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지급과 보좌관문제와 관련하여 일비, 여비, 연수비 등의 명목으로 실제 적지 않은 돈을 받고 있으므로 명예직아닌 유급직으로 하고, 보좌관은 자신의 보수범위안에서 들 수 있도록 함(강형기 충북대학교수).

- 지방의원의 유급직 전환여부도 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겨야 함(조창현 한양대학교수)
- 유급직으로 하되 회기가 길어야 4개월 정도니 보수는 풀타임(Full Time)제보다 하프타임(Half Time)제가 적절함.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고 지방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앙과 지방, 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의회간 권력배분의 균형화가 필요하고 지방의원의 자질향상과 함께 지방의회 제도와 운영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중앙과 지방간에 권력균형을 위해서는 ①국회와 지방의회간에 적절한 역할분담이 이뤄져 지방의회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권이 실효성을 가질수 있도록 지방의회가 증언감정권을 갖는 문제와 증인의 불출석이나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문제도 차제에 발전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②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의회 사이에도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요구되고 지금은 민선 자치단체장이 없으므로 단체장의 의회해산권이나 의회의 단체장에 대한 불신임결의권 및 신임투표권이 없으나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의원의 자질향상에있어서는 ①무보수 명예직인 의원에 대한 보수나 대우는 중앙에서 획일적 지침을 내려 정하는 방식을 피하고, 지방별 사정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거나, 지방의회가 재임기간 동안 스스로 능력에 따라 정하고 주민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옳고, ②지방의원들의 과다한 업무를 덜어주고 의정활동에서 자료수집 및 전문지식 취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좌인력이 요구됨(손봉숙 여성정치연구소장).
- 95년 6월 4개 지자체선거의 동시실시로 빚어질 기초의회의 공백보완책으로 현행 기초의회위원의 임기를 차기의회 임기개시 전날까지 연장하는 것과 기초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한시적으로 시·도자치단체의 승인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중임(내무부).

: 조선 94. 3. 3., 4면; 경향 94. 4. 6., 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5호(49면) · 제13호(57~58면) 참조

◎社會·文化·教育

○고용보험법시행령 제정의견

- 고용보험제 시행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을 실업급여를 확정하여 「고용보험법」과 관련한 하위법령 제정 및 고용 보험전산망 개발을 완료한 뒤 95년 상반기중

고용보험 주전산기를 설치하고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제 적용 사업장·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등록을 받을 예정으로 이에 따라 96년 7월 1일부터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 실업급여를 지급키로 하고 지방노동관서에 실업신고를 마친 실직근로자가 실업전 근무회사에서 월평균 임금의 0.25%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1년이상 낸 것이 인정되면 근무하던 회사의 통상임금 수준의 50%를 지급받게 됨.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기간은 25세 미만이거나 재직기간이 1년 이상~3년 미만인 경우 30일간, 50세 이상 혹은 장애인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경우 2백10일간 받도록 하는 등 나이·재직기간에 따라 최저 30일에서 최고 2백10일까지 받도록 함(노동부).

: 경향 94. 2.26.,23면

○공동모금법(가칭) 제정의견

- 민간의 모금액을 정부가 배분하는 형태의 사회복지기금 지원사업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고자 함에 따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민간단체들이 주축인 이웃돕기운동추진협의회측은 현재 민간과 시·도로 나뉘어 모금중인 이웃돕기 성금을 민간주도로 1년에 한차례 모금활동을 한뒤 이를 지역별 민간단체 조직을 통해 사회복지시설등에 배분하는 「공동모금법(가칭)」 초안을 마련함(보사부).

: 조선 94. 2.24.,2면

○교육개혁관련 입법의견

- ①입시지옥 해소책으로 대학입학정원을 자율화하고 인문고의 상당수를 대학준비교육과 직업교육을 동시에 시킬 수 있는 종합고 체제로 개편하고, ②공정적 측면에서 고교교육의 정상화에 큰기여를 하고 선택 폭의 확대를 가져온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복수지원제도는 고교평준화로 인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킨 부정적인 면이 있으므로 고교평준화는 반대하며, ③교육재정 확충방안으로 교육세를 인상,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전입금 확대, 「학교후원회법(가칭)」 등을 제정해야 함(박범진 민자당의원).

: 한겨레 94. 2.25.,4면

○교육관계법 개정의견

- 우수교원확보를 위해 교육공무원의 독자적인 보수체계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 「우수교원확보법(가칭)」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학교용지를 확보할 책임을 지우는 「학교용지확보특별법(가칭)」등 4개법을 제정할 방침이고 사학재단의 전횡을 막고 사학의 투자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며 지역실정을 감안, 공납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자 함(김숙희 교육부장관).

- ①대학정원을 교육시설 및 교수확보율 등 교육여건 확보에 따라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게 하는 대학정원 자율화를 추진하고 대학을 특성에 맞게 연구(대학원)중심 대학과 학부중심 대학으로 다양화하며, ②학생선발권을 대학자율에 맡기고 수학능력시험의 출제 등 관리를 현행 국립교육평가원에서 민간기구로 넘기는 방안 등을 마련함(교육부).
- 교육개혁을 위한 대입관련 제안으로 국·영·수 중심의 대학별고사 반대, 대학자율화 조기실시, 사립대 기여금입학제도 반대, 교수조기명예퇴임 제도 실시 등이 제기되고, 초·중등교육과 관련하여 고교평준화 폐지, 내신비율의 축소조정, 고교내신 유효기간제 실시, 외국어 조기교육 실시와 전담교사제 확보 등이 건의됨(교육개혁위원회 국민제안 접수창구).

: 서울 94. 3.23.,2면; 동아 94. 3.25.,31면; 세계 94. 3.29.,25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3호(54~55호)·제4호(30~31면) 참조

○교육기본법(가칭) 제정의견

- 해방이후 우리나라 교육의 근간을 이루어온 「교육법」을 폐지하고 교육학제 및 교육관계법개정 등 10개 과제를 구체적으로 연구할 5개 소위원회를 구성, 위원회별로 5월중 중간보고를 거쳐 6월중 개혁안을 확정기로 함(교육개혁위원회).

: 경향 94. 3.13.,1면

○교육법시행령 개정의견

- ①현재 2학기제와 계절학기만 운영하도록 되어있는 대학학기제를 내년부터 대학자율에 따라 연간 3학기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②월반·속진은 95학년도부터 허용하되 과목별로 고교에서 교과과정을 모두 이수한 학생에게도 국가가 일정한 시험을 거쳐 대학진학이후에도 학점으로 인정해주도록 하는 교과목별 속진제는 96년부터 시행하며, ③96년 3월 시행을 추진중인 교사자격증 유효기간제는 신규임용교사부터 유효기간을 정하되 교장은 10년, 2급 정교사와

중교사는 5~10년사이에서 정하고 교장은 임기제, 수석교사 및 교감은 정년을 보장하며, ④국민학생 외국어조기교육을 위한 교사확보를 위해 교육대학에 초등영어교육 심화과정을 설치 운영하고 영문과 출신자에게 적절한 연수 실시후 자격증을 부여하도록 함(교육부).

- 다양한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입학정원의 5%를 특별전형하여 95학년도 입시부터 전국 1백36개군에서 1명이상씩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내신성적으로 농어촌학생 1백36명을 선발하고 격·오지에 근무하는 기업체근로자, 전방의 장기하사관, 낙도교사, 국가공무원의 자녀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기로 결정하고 교육부의 승인을 요청함(연세대학교).
- 연세대의 이번 결정은 과외나 사설학원 등의 수강기회가 거의 없어 좌절하기 쉬운 농·어촌과 도서·벽지 학생에게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고 다수의 대학들이 이 방식을 도입하면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화시대를 맞아 소외되어 왔던 지역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음(조선일보 해설).

: 조선 94. 2. 25., 31면; 조선 94. 3. 4., 30면; 조선 3. 5., 3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6호(74면) · 제9호(94면) · 제13호(60면) · 제94-1호(55면) 참조

○교육·입시제도관련 입법의견

- 현행 내신제도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내신반영비율은 40% 이상으로 유지하되 반영방법은 대학자율에 일임해야하고 재정난을 겪고 있는 사립학교 중 경영력이 떨어지는 학교는 교육용 학교 기본재산을 기부채납 형식을 통하여 공립으로 전환하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각종 학교의 정규학교 전환기준을 완화함. 교장·교감 연수대상자 선발방법을 현행 장기경력자 우선제와 함께 일정경력에 있는 젊고 유능한 교사들도 일정비율내에서 엄정한 공개전형을 거쳐 승진하게 하고 실효성 없는 고입 체력검사를 폐지하며, 교장임기중 명예 퇴진 허용, 공립 유치원교사 증원, 교육과정담당 장학관제를 신설함(시도교육감).
- 사립학교를 폐교할 경우 학교의 모든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채납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사립학교법」을 고쳐 학교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교사와 운동장 등 교육용 기본재산은 채납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은 재단이 갖게하여

공립학교로 전환하도록 함(교육부).

: 동아 94. 3.22.,31면; 한겨레 94. 3.22.,19면

○교육재원확보관련 입법의견

- ①교육재정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학교용지확보를위한특별법(가칭)」을 제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교육세법」을 개정하여 98년까지 15조원 안팎의 추가재원이 교육부문에 투입되도록 하고, ②과다한 사교육비를 공교육 부문으로 흡수하는 방안으로는 학교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수익자(학생)부담으로 하고 학력이 뒤쳐지는 학생의 보충수업을 실시하거나 예체능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이같은 유상교육을 통하여 사교육에 대한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학원과의비를 간접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도 거둘수 있음(교육부).
- 교육세법 개정안 :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역할을 증대시켜 지자체별 교육환경과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지방세법에 근거한 등록세, 마권세,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액에 대한 교육세의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높이도록 규정함(교육부).

: 국민 94. 3.23.,9면

○교회재산보호법(가칭) 제정의견

- 교회의 임야는 토초세를 면제해 주고 토지는 5년간 토초세를 유예해주며, 택지에 대한 의무기간 연장과 사택을 취득할 수 있고는 내용의 국내 개신교 23개교단 대표들이 제출한 「기독교재산보호법안」 청원이 국회 계류중인데 교인들의 헌금으로 운영되는 한국교회를 더 이상 영리단체로 간주하지 않아야 함(국민일보 해설).
- 기독교 재산의 합리적이고 적절한 관리와 보호를 위해선 관련 「세법」을 개정하거나 행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인 종교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고 교회 재산과 관련한 분쟁의 소지를 위해선 「기독교재산관리법(가칭)」이 제정돼야 함(국민일보 해설).
- 비영리법인과 종교법인을 차별해야 하는지, 종교활동을 법에 맞춰야 하는지 법을 종교활동에 맞춰 바꿔야 하는지, 불교·천주교·민족종교 등 종교마다 별도로 재산관리법을 만들지, 통합하여 「종교재산관리법(가칭)」을 만들지, 문화체육부에 등록하지 못한 종교단체는 어찌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와 교회가 세금

을 냈든 안냈든 국세청의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단체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등이 「기독교재산관리법(가칭)안」 조항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종교활동에 썼다고 입증하면 이자소득세까지 면세되는 실정이므로 이를 도입하면 금융관행상 교회통장을 과세로부터 안전한 성역으로 울타리치는 결과를 빚게됨(한겨레신문 해설).

- 교회 재산은 그 기원에 있어서 신앙적 기반을 토대로 한 십일조 또는 헌금으로 이뤄지며 성경에서도 이 헌금은 일반세금이나 시민 국가에 대한 의무화 엄밀히 구분함에 있어서 교회의 경제질서를 침해하는 것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기독교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독교재산관리법(가칭)안」은 관철돼야 함 (김용복 전주한일신학교학장).

: 한겨레 94. 2.20., 9면; 국민 94. 2.12., 3면; 국민 94. 3. 2., 22면

○근로기준법시행령 개정의견

-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무역상대국의 노동자 인권보호수준을 문제삼아 교역국에 무역보복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블루라운드를 본격 제기할 움직임이고, 우리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원칙상 4인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일부 단결권의 제한, 강제근로제도가 있는지 여부등이 법과 제도상의 취약점이 될 것으로 파악되므로 우선 국제노동기구(ILO)의 여러 협약가입에 장애가 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적용범위를 2인 이상으로 확대함(노동부)
- 노동관계법을 국제노동기구(ILO) 수준으로 개정하고 ILO협약의 국내비준을 추진하고 「근로자파견법(가칭)」 제정과 변형근로시간제 및 무노동 무임금을 법제화하려는 「근로기준법」 개정은 문민정부 최대의 악법임(이기택 민주당대표).

: 국민 94. 3.22., 17면; 서울 94. 3.25., 6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3호(61~62면) 참조

○기금교수제관련 입법의견

- 대학의 연구기능강화를 위해 기금교수제를 도입하고 석좌교수, 계약교수등 교수직제를 다양화하기위해 현재 전임교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관련조항을 개정하며 전임강사 2년, 조교수 4년, 부교수 5년 등 복무연한 위주로 되어있는 교수승진과 채용등 인사절차를 연구업적등에 따라 객관화하기로 하고 대학교육협의회에 의뢰한 준거모델 개발이 끝나는

대로 시행함. 기금교수제 도입을 전제로 현재 국고잡수입으로 전환되는 국립대 학기탁기금을 해당대학 발전기금에 전입시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임(교육부).

: 세계 94. 2.23.,22면

○노동관계법 개정의견

- 노동관계법 개정과함께 노조의 정치참여보장, 소비자물가 5%이내 억제, 노동자의 경영자참가보장, 고용보험제 확대실시등이 요구됨(한국노총).
- 복수노동조합 금지, 노조의 정치활동 제한, 제3자 개입금지 등에 관한 노동법 조항의 점진적인 개정을 검토하겠음(남재희 노동부장관).
- 단결활동권과 관련한 노동법관계법 개정요구 대상은 노동기본권의 보장과 직접 관련될 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가 정한 조약·권고와도 합치하는 것이며 사용자단체에서 제기한 요구도 현실적인 조건을 감안하여 수용할 만한 내용은 받아들여야 함(한겨레신문 해설).

: 한국 94. 2.25.,2면; 조선 94. 2.27.,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45면)·제2호(45면)·제7호(61면)·제8호(78면)·제9호(94면)·제12호(79면) 참조

○민간복지자원육성법(가칭) 시안

- 예산부족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저소득·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내년부터 자원봉사자에 대해 공무원임용이나 회사입사시 특혜를 주는 방안과 자원봉사활동중 사고를 당할 경우 충분한 보상을 위해 정부와 자원봉사단체들이 보험료를 분담하는 '자원봉사상해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청소년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고교등의 내신성적에 자원봉사항목도 추가해 대학들이 입학전형에서 입시총점에서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헌혈제도와 같이 자신의 봉사활동 종류 및 시간등을 등록, 나중에 필요시 무상으로 봉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보사부).

: 세계 94. 4. 4.,22면

○방송법 개정의견

- 방송구조 개편을 위해 「방송법」을 개정하고 방송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

송프로그램 제작단지를 조성하며 이를 위한 민자유치를 위해 세제·금융상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방송사가 허가기간중에 방송한 내용이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재허가시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제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프로그램제작 분야와 뉴미디어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기업의 방송사업 참여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임(오인환 공보처장).

- 방송심의와 규제를 근본적으로 자율화하고, 흩어져 있는 방송 규제기관을 단일화하며, 방송 저질화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합리적인 재허가 기준을 마련해야 함(한겨레신문 해설).
- KBS 경영위원회 신설, 방송발전기금 조성, 시청자위원회 설치, 송신공사 설립등과 공중파방송과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등 방송전반을 종합관리하는 '방송통괄기구(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교육방송을 독립공사화 함(공영방송발전연구위원회).
- 뉴미디어의 탄생으로 방송규제의 근거였던 전파의 희소성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는 마당에 규제를 강화하는 공발연의 방안은 시대적 상황과 모순됨(정초영 PD연합회 회장).
- 방송통괄기구가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등 뉴미디어를 포괄하는 기구로 최근 방송과 통신이 결합되는 시대적 추세로 보아 통신영역을 배제한 공발연의 방안은 앞으로의 문제에 대비할 수 없음(강대인 계명대교수).

: 경향 94. 2.18.,2면; 한겨레 94. 2.19.,3면; 세계 94. 2.27.,2면; 세계 94. 3. 1.,17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3호(64면) 참조

○사립학교법 개정의견

- 6공초 사학재단이 인사·예산에 대한 문교부의 감독권배제를 사학경영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반면 교사와 학생들은 교수재임용제의 철폐, 교무(교수)회의의 의결기구화, 교사임면권의 학교장위임과 인사위원회의 설치, 예산결산등의 재정공개, 재단설립자 친인척의 총·학장취임 금지등을 요구하는 논란끝에 「사립학교법」은 90년 3월 14일 국회를 통과했으나 그 내용은 교원단체의 요구를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재단의 권한만 대폭 강화시켜 “학원경영은 재단, 학사운영은 학교”라는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못함(한국일보 해설).

- ①현행 내신제도의 지역간, 학교간 불균형의 문제에 있어 각 고교는 내신성적 산출을 위한 자료만 제시하고 대학이 내신등급수 조정, 과목별 가중치 부여, 행동발달사항 반영비율등 내신반영 방법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②전국 47개 대학이 본고사를 치르기로 함에따라 수능시험의 존폐에 재검토가 필요하며, ③재정난이 심한 사립학교를 기부채납등의 방법으로 공립학교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④고입체력검사를 폐지하여야 함(시·도교육감회의).
- 상문고 비리사건을 계기로 교사의 자율적 의사결정권이 확립될 수 있도록 교무회의를 의결기구로 만들고 예결산위원회와 인사위원회가 엄정하게 운영되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교사모임).

: 한국 94. 3.19., 4면; 한국 94. 3.22., 31면; 국민 94. 3.21., 21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6호(77~78면) · 제9호(96~97면) 참조

○사회복지사업기금법 개정의견

- 각종 성금을 둘러싼 부조리는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구시대의 사회악이며 일체의 성금을 민간단체가 관장케 해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국민일보 해설).
- 모금의 경우 민간이 주도하고 배분도 이웃돕기성금, 장애인성금, 불우아동결연후원금 등 사회복지사업기금 관리를 민간에 완전히 넘기기로 함(보건사회부).

: 국민 94. 2.23., 3면; 한겨레 94. 2.24., 18면

○소극장규제관련법 개정의견

- 소극장은 현행 「건축법」상의 규제에 묶여 불안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소극장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관람·집회시설로 용도를 변경해야 하나 영세한 재정상 어려우므로 사회전반적으로 행정규제완화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큼 소극장을 근린생활시설로 취급해야 함(연극계).
- 공연장의 경우 화재등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연극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건설부).
- 소극장에 대한 용도변경 시정명령과 벌칙규정의 적용을 유보해야 함(문화체육부).
- 소극장들이 파행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합법적인 문화공간으로 탈바꿈되도록

이곳을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고 소극장설치기준을 새롭게 마련해야 함(전문가).

: 세계 94. 2.18.,17면

○영화법 개정의견

- 지금까지 우리의 영화 진흥책은 외화수입업에만 전념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으며 특히, 현행 「영화법」은 외화수입으로 번돈을 한국영화제작에 투자하도록 권유하고 있으나 이 제도가 유명무실해짐에 따라 영화제작보다는 외화수입에만 관심을 갖는 제작자들이 더 많았던 것이 현실이었으므로 한국영화제작자에게만 금융 또는 세제 지원등의 혜택을 주는 진흥책으로 개선되어야함(한국영화제작가협회).

: 서울 94. 3. 1.,14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2호(46면) 참조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의견

- 「장애인고용촉진법」이라는 좋은 취지를 가진 법이 실제로는 정반대로 기업체에 의하여 악용되고 있으므로 제도적으로 어느 기업체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에 내는 벌금액을 대폭 올려야 하며 생산직·사무직 모두 장애인들의 장애등급에 알맞는 일을 개발하고 연구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해야 함.

: 법제처 입법의견신고센터에 접수된 입법의견.

○종교법(가칭) 제정의견

- 사회적인 자정으로 사이비종교집단의 폐해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종교법(가칭)」을 제정하는 등 정부의 장치가 불가피함(기독교계).

- 종교연구가 탁명환씨 피살사건은 우리 사회의 어떤 공해보다도 더 심각해진 종교공해의 한 단편이며 전체 종교계 차원에서 「종교법(가칭)」 제정 등을 추진해 자체 정화에 나서야 함(오충일목사 복음교회총회장).

: 국민 94. 2.22.,19면; 한겨레 94. 2.24.,11면

○종교법인법(가칭) 제정의견

- 다종교상황을 관리하는 고유의 기능을 회복해 종교문제의 공론화를 유도하고 모든 종교들의 활동을 주무관청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종교단체등록법

(가칭)」을 제정하고 정확한 종교실태조사를 실시, 종교적 위기에 대처해야 함
(윤이흠 서울대학교수).

- 한국종교의 비리유형은 체제와의 결탁, 기복성, 비지성적 종교의식, 세속화등으로 이의 개혁이 요구되며 현행 종무행정을 맡고있는 문화체육부 종무실은 다종교상황에 걸맞은 기구로 격상돼야 하며 중앙집권적 폐해와 비효율을 줄이려면 종무행정을 지방행정기구로 대폭 넘겨야 하고 종교단체의 재산권시비나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일본처럼 「종교법인법(가칭)」을 제정해야 함(조홍윤 한양대학교수).

: 경향 94. 2.20., 13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2호(82면) · 제13호(66~67면) 참조

○학교보건법 개정의견

- 청소년들의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부추기는 저질 선정잡지가 학교주변 서점들을 통해 유통되는 것을 막고 단속법규 제정과 함께 학교, 학부모, 유관기관이 함께 노력해야 함(이정진 참교육실천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 한겨레 94. 2.28., 16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8호(84면) 참조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의견

- 교육청의 수강료 기준이 유명무실하므로 실효성 없는 법률을 내세워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수강료를 묶어두는 것보다 현실에 맞는 수강료를 책정해야 함(한국학원총연합회).

: 한겨레 94. 2.14., 19면

◎産業 · 經濟

○OUR관련 입법의견

- 우리나라 무역보호를 위해 미국의 슈퍼301조와 같은 무역규제를 만들어야 함(이규택 민주당의원).
- UR타결로 수출확대효과가 커서 무역수지개선이 기대되나 무한경쟁에 대비해

적극적인 내부체질개선이 필요하므로 정부는 ①연불수출금융등 산업지원제도를 개선하고 산업피해구제제도도 보강하며, ②한계기업의 정리를 유도하고 기초소재산업등에 대해 관세인하 또는 무세화조치를 취해야 하고, ③독과점구조시정을 전제로 각종 가격자율화를 실시해야함(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장).

- 미국등이 통상무기로 이용하는 지적재산권문제는 특히 의장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등 국내법제도의 일부 개편이 불가피함(김문환 국민대학교수).

- ①통화를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통화관리의 간접규제방식을 조속히 정착시켜야 하며, ②금융시장개방은 국내경제여건을 고려해 계획적·단계적으로 하며, ③정책금융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대기업 여신관리제도를 정비하여 선진화된 금융제도를 확립하고, ④선진 금융기법 및 신금융상품도입을 촉진해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유도하고, ⑤「금융선물거래법」, 「외국환관리법」 개정등 제도의 정비 필요함(이재웅 성균관대학교수).

: 동아 94. 3.19., 4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3호(72면~73면) · 제94-1호(62~63면) 참조

○경제기획원직제개편에 관한 입법의견

- 문민정부에서 물가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경제기획원을 산업조정원(Industrial Head Quater)로 승화시키기를 건의함. 즉, 예산국은 재무부로 이관하고 산업조정원 아래에 산업계획국, 산업정보국, 물가국을 둔다는 것임.

: 법제처 입법의견신고센터에 접수된 입법의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의견

- 공단입주계약때 한꺼번에 내던 관리비를 4월부터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비징수율도 분양대금의 7%이내에서 2%이내로 하며 업종 및 규모에 따라 들쭉날쭉한 기준공장 면적률을 업종별로 단일화하고 최고 60%까지의 기준공장 면적률도 최고 50%까지로 대폭 낮추기로 하며 기준공장면적률 달성의무기간도 현재 4년을 원칙으로 1회에 한해 1~2년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기업의 사업계획에 맞춰 연장이 가능하도록 신축적으로 운용하기로 함. 개정 시행령은 공장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5년간 환매특약 등기를 의무화하던 것을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특별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폐지하기로 함(상공자원부).

- 87년에 기업의 부동산투기 억제에 위해 마련된 기준공장 면적률이 기업의 예비공장 부지확보등을 막고 있고 취득세, 토지초과이득세 등 각종 세금이 무겁게 부과되고 있으므로 기준공장 면적률을 3천평방m(9백7.5평) 미만의 공장은 기준공장 면적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3천평방m 이상 공장의 기준공장 면적률도 현행 최고 60%에서 최고 50%로 하향조정하며 기준공장 면적률 달성을 위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6년으로 늘림(상공자원부).

: 한국 94. 3.22.,9면; 한국 94. 3.27.,9면; 동아 94. 4. 9.,10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50면)·제3호(57~58면) 참조

○국가표준기본법(가칭) 및 동법 시행령 제정의견

- 우리 「헌법」 제127조 제2항에는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라고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제도적 장치나 입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국가표준기본법(가칭)」의 제정으로 국가정보 기술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개방화·국제화를 대비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함.

: 법제처 입법의견신고센터에 접수된 입법의견.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의견

- 「국토이용관리법」 제2조에 의하면 해당 부동산 거래시 먼저 신고나 허가를 받은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어있고 허가를 받지 아니한 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하여 허가없는 선계약은 무효로 하였던 데 이는 거래관습에 현저히 배치되어 위법자를 양산하게 되므로 개정되어야 함.

: 법제처 입법의견신고센터에 접수된 입법의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명령제4조의시행에관한규정안관련 입법의견

- 시행령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앞으로 뇌물범죄와 불법자금세탁행위 등 지능적인 경제범죄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고 실명제 정착을 위해 거래자의 비밀보호가 중요한 점은 인정하나 지나칠 경우 검은돈의 추적을 봉쇄해 사회구조적 부패·비리를 방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공직자 부패나 정경유착

등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구조적 비리척결을 위한 제도적보완장치가 필요함(검찰).

-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실명제 정착을 위해서는 고객의 비밀보호가 최우선임(재무부).

: 한겨레 94. 4. 4., 2면

○금융실명제관련 입법의견

- 현행 긴급명령은 실명제 관행이 제대로 정착된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법제화가 가능한 시점에 가서 금융자산에 대한 종합과세 실시와 병행하여 필요한 입법을 추진해야함(재무부).

: 동아 94. 2.13., 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2호(83~85면) · 제13호(68~69면) 참조

○금융실명제에거래및비밀보장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을위한규칙 개정의견

-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 가운데 종교단체와 종친회에도 납세번호를 부여, 단체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재무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의견

-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각종 경제행정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1백 81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포함할 경우 6백여개 법령)에 흩어져 있는 총 1천3백74건의 규제조항을 확정, 개선대상에 포함된 33개분야별 주요법률과 규제내용으로 △소방=방화관리자 선임, 건축허가 사전동의, △과학기술=국산기술제품 신고,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 △물가·공정거래=최고가격 지정, △외자도입=주식매각 신고, 자본채 처분제한, △통관·하역=관세사 법인설립인가·등록, △금융=단기금융업법, 상호신용금고업법등에 의한 사업인가, 요율제한, 점포설치 규제, △신탁, 보험, 증권=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매출신고, △외환=외국환 업무인가, 계약체결인가, △농지·양정=농지매매증명, 양곡매도명령, △농정·농수산물유통=농지소유제한 비료가격 결정, △축산=낙농지대 지정, △산림=전용부담금 납부의무, △수산업=수산제조업 사전허가, △중소기업=단체수의계약제도, △유통=시장개설허가, △무역=수출대금

회수 승인, △공업배치=공단용지 환매, △공업규격·계량=제품규격 표시허가, △에너지이용=고압가스용기·냉동기 제도허가, △국토개발=수도권정비법상 신증설 제한, △도시계획=준공검사, △주택, 건축, 도로=사도개설허가, △토지 건설업=택지보유 제한, △보건사회=약품수입 허가, △환경보전=폐수처리업 허가, △폐기물관리=정화시설 설치승인, △근로기준 산업안전=휴업지불 야업금지, △직업안정=근로자공급사업 허가, △교통정비, 철도, 관광=외화획득명령, △도로운송, 화물유통, 항공=운임, 요금인가, △해운항만=국적선 이용의무, △체신=부가통신사업 등록 및 양도양수신고(상공자원부).

: 한국 94. 2.17., 9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1호(65~66면) 참조

○보조금제도 개편관련 입법의견

- 농기계 반값공급등 농기구 구입자금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용 원자재 공급지원제도 등 상당수의 보조금이 95년 WTO(세계무역기구) 출범후 5~8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폐지되나 벽지 버스노선 손실보상제도, 항공운송사업진흥보조금,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지원, 환경보전협회 지원제도, 농업생산자재 개발시험연구사업지원등은 계속됨. 우루과이라운드(UR) 보조금 상계관세협정에 따라 현재 시행중인 보조금제도의 수출손실준비금 손금산입, 해외사업소득공제, 해외접대비 손금인정, 특별설비자금등이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돼 폐지가 불가피하며 농기계구입자금, 무역금융, 수출사업설비자금대출제도, 유망중소기업발굴 및 지원, 중소 소재·부품운전자금, 신기술기업화, 사업용자산, 투자세액공제 등은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많음(재무부).

: 세계 94. 2.26., 1면

○산업표준화법 개정의견

- 국내제조업의 기술개발과 품질향상노력을 가속시키기 위해 한국공업표준규격(KS)의 국제화가 불가피하며 5천개에 이르는 KS심사기준을 올해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비전기전자제품은 ISO-9000시리즈에 일부 전기·전자분야는 IEC규격과 일치시킬 방침임(공업진흥청).

: 조선 94. 4. 6., 10면

○소득세법 개정의견

- 96년에 발생한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 97년부터 종합과세하되 일정액 이상의 고액 소득부터 단계적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일정액 미만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분리과세하거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가운데 납세자가 선택하도록 함(재무부).
-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정상적인 부동산거래를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했기에 입주조항에서 현재 「주택임대차법」상 계약기간이 2년으로 되어있어 세입자때문에 입주하지 못한 때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고 세금으로 물리지 않고, 부득이한 사유로 1년이내에 집을 팔지 못한 때나 5년소유, 3년거주조항도 일정기간 비과세하는 방향으로 하며 그동안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있을 때는 세무회계를 중심으로 과세했으나 앞으로는 기업회계를 존중하여 억지로 과세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없이 물건을 사고 파는 무자료거래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하는 경우는 증여세를 비롯한 각종세금을 과세하여 차명거래를 줄여감(국세청).
- 기업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기간을 최근의 기술발전속도에 맞춰 대폭 단축하고 현재 일부 비상장법인에 부과하고 있는 초과유보소득세를 기업의 본래 목적을 위한 유보시에는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해외진출기업이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금이 당해연도 공제한도를 넘는 경우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세액은 다음해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임(재무부).

: 서울 94. 2.13., 3면; 경향 94. 2.15., 3면; 한국 94. 4. 7., 8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2호(87~88면) 참조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의견

- 주민등록상 같은 가구를 구성하는 가구원들이 주택을 공동 상속할 경우,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의 단독 상속으로 간주하고 지분이 같은 사람이 둘을 넘을 경우에는 분가의 경우처럼 호주승계인, 연장자의 순으로 주택소유자를 정할 방침임(재무부).

: 서울 94. 4.10., 9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8호(94면) 참조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의견

- 금고는 온라인이 안되고, 신용카드 발행도 못하고 공공요금 수납도 못하며 여수신 업무도 엄격한 동일인 한도 등으로 묶여 있으므로 「신용보증기금법」의 규제를 풀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함(곽우섭 상호신용금고연합회 회장).
- : 한겨레 94. 3.14., 7면

○유통단지개발촉진법(가칭) 제정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등과 함께 민간기업에도 유통단지 개발사업권을 부여하되 민간개발의 경우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을 매입하면 나머지 토지에 대해 수용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담겨있고 개발사업자는 개발된 토지와 시설등을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며 「유통단지개발촉진법(가칭)」의 적용대상으로는 농수축산물 가공·유통시설에 미곡종합처리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집배센터, 축산물도축장, 육가공시설 등을 포함함(농림수산부).
 - ①유통구조개선을 위해 일차적으로 유통단지를 개발한후 여기에 화물터미널 및 창고, 도매센터, 집배송단지, 농수산물도매시장, 공판장등 개별법에 의해 설립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유통시설등을 집단유치키로 하고, ②유통시설물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의한 설립 인·허가를 면제하며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에게 건물, 토지등의 수용권까지 부여하고, ③「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변경이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형질변경등도 모두 면제하며, ④유통단지개발사업자가 민간인일 경우에는 사업대상면적의 3분의 2이상을 매입하고, 토지 및 건물소유주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토지수용권등을 행사할 수 있고, ⑤유통단지내에는 상품포장재등의 일부 제조시설이나 금융, 의료, 교육 및 정보센터등 각종 유통지원시설도 들어설 수 있음(경제기획원).
 - 유통단지는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자금의 조달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과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민관 합동개발'과 다수 기업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나 조합이 맡는 '민간개발 방식'을 활용함(경제기획원).
- : 국민 94. 4. 2., 1면; 세계 94. 3. 3., 7면; 서울 94. 3. 3., 8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3호(73면) 참조

○증권거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 30대 계열그룹소속 기업이 다른 기업의 상장주식을 매입할 경우 계열소속 모든 기업의 소유분을 합해 5%이상 보유하게 되면 반드시 고시하고 개인 및 기업이 상장주식을 10%이상 취득할 경우 증권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던 공개매수 신고서를 앞으로 5%이상 취득하는 순간 제출토록 공개매수제도를 강화하며 발행주식총수의 5%이내에서 자기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재무부).

: 조선 94. 3. 4., 10면

○지적재산권관련 입법의견

- 외국 일류기업과 맞상대해야 하는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아 ①연불수출금융 수출보험 등의 활성화를 통한 산업지원제도 개선, ②산업피해구제제도 보강, ③ 무역관련절차 단순화, ④한계기업정리, ⑤외국인근로자 취업허용 등의 적극적인 체질개선과 대응책이 마련돼야 함(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장).
- 취약부문인 금융시장 개방과 관련, 소극적인 시장방어 자세에서 적극적인 개방자세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①외국자본유입에 대비한 통화관리의 간접규제 방식, ②정책금융의 단계적 축소, ③금융기관의 해외진출 확대, ④「금융선물거래법(가칭)」 제정 등 관련제도의 정비가 시급함(이재웅 성균관대학교수).
- 특허와 의장의 보호기간은 각각 현행 15년과 8년에서 20년,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컴퓨터 프로그램도 창작자 사후 50년까지로 보호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고, 상표부분도 그동안 흑백상표만 보호해 왔으나 이제는 색채상표까지로 확대해야 하며 새로운 식물의 발명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법제정이 필요함(김문환 국민대학교수).

○특별소비세법 개정의견

- 휘발유와 경유의 특별소비세가 목적세인 교통세로 전환되면서 세수를 정확하게 추정해낼 수 있는 종량세를 도입해야 함(상공자원부).

: 조선 94. 2.12., 8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2호(90~91면) 참조

○특허심판제도관련 입법의견

- 특허청에서 맡아온 항고심판소를 폐지하는 대신 서울고법에 특허전담부를 설

치해 오는 96년 3월부터 운영하기로 하고 각 공업분야의 전문가들로 임명될 기술심리판제를 도입해 공업소유권관련 재판에 자문역을 맡도록 하며 이들 소송에 한해 변리사들이 법정변론까지 맡을수 있게 함(대법원).

- 특허심판은 기술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하며 전문 특허법원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6개 업종별협의회).
- 특허심급제도가 법리상 문제점이 없는 바는 아니나 특허소송을 단순히 일반법원(고등법원)에서 일반 민·형사사건과 동일한 차원에서 다루는 것보다는 특허재판의 특수한 성질에 따른 재판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특허항고심판을 법원의 관할로 하되 그 법원은 특허쟁송의 특수성 전문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전문판사로 구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유럽연합이나 독일식 특허법원을 설치하고 기술판사제를 도입해야 함(법학계).
- 특허행정 경쟁력 강화의 핵심 특허심판제도는 UR이후 느슨하던 GATT체제에서 WTO체제로 세계 경제질서가 재편될 것이 분명해지면서 지적재산권 관련법제도도 EU의 「구주공동체 특허법원」 제도처럼 점차 통일화될 전망이고 보면 아직 '우물안 개구리'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재 특허심판제도 역시 세계화하고 국제화, 표준화해야 함(이상희 한국발명특허협회 회장).

: 한겨레 94. 3.31.,2면; 경향 94. 3.31.,23면; 세계 94. 3.18.,9면; 세계 94. 4. 1.,9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6호(88면) 참조

- 어려운 여건의 우리 산업계가 지금 각계에서 현행 특허심판제도를 둘러 싸고 서로 다른 개선방안이 제기되고 있어 매우 불안한 실정임. 특허심판의 특징은 기술적 사실관계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기술의 전문성이 중시되고 판단기준의 일관성유지가 필요함. 현행 특허심판제도를 유지하면서 고등법원에서 이를 재차 심리하는 것은 재판의 신속성의 저하와 비용부담이 우려 됨. 근본적으로는 선진국들처럼 기술전문가가 재판을 주도하는 전문특허법원이 바람직하나 우리의 경우에는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현행심판제도를 유지하되 심판기능을 대폭강화 해야 함.

: 법제처 입법의견신고센터에 접수된 입법의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개정안

- 지금까지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제조, 수리, 건설, 위탁에만 한정돼 보호받지 못하는 업종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소프트웨어등 신기술분야도 이 법의 보호를 받게 됐고, 중소기업간의 거래에서 하도급관계가 성립되는 기준을 위탁하는 기업의 매출액이나 종업원수가 위탁받는 기업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 적용범위를 확대함. 건설하도급의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공사가 6개월이상 계속되는 경우 적어도 한달에 한번은 공사진척도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되 어음으로 줄 때는 만기 60일 이하짜리로 끊어주도록 하고,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법을 위반한 업자에게는 입찰제한등의 제재외에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벌칙을 강화하며 거래가 끝난 지 3년이 넘는 경우는 하도급조사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을 기한내 신고만 되면 조사를 하도록 규정함(공정거래위원회).

: 국민 94. 4. 6.,7번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48) 참조

◎農林·水産

○농어업재해대책법관련 입법의견

- UR협정 타결에 따라 농업생산을 늘리거나 시장가격을 조절하기 위한 목적의 정부지원정책은 더이상 확대키 어렵고 농민들이 풍수해등 자연재해와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폭락사태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농작물보험제를 도입, 시행할 방침이나 시행초기에는 농민들의 보험료부담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농민 부담의 절반이상을 무상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임(농림수산부).
- 농가지원기준을 대폭완화하여 1ha미만의 경지면적 기준을 철폐, 지원대상을 영농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지원기준 피해율 50% 이상도 대폭 완화할 방침임(농림수산부).
- 국제화에 따라 농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농지소유상한과 대상을 확대해 나아가겠으나 농지의 투기는 철저히 봉쇄하고, 농업재해에 대한 피해보상규모를 늘려나가도록 하며, 축산, 원예 등의 재해에 대해서는 재해보험 등을 통해 전액보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이회창 국무총리).

- 농특세는 법인세·종토세·증권거래세액을 주대상으로 하되 농어민만을 제외시키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일부를 대상으로 했으나 그 규모는 미미할 것임(정재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 세계 94. 2.12., 7면; 국민 94. 2.12., 2면; 경향 2.24., 4면

○농업과학기술원설립관련 입법의견

- 농업과학기술개발을 위해 농촌진흥청에 한국과학기술원과 비슷한 기능을 가진 농업과학기술원을 설치하여 유전공학을 이용한 농업기술등 첨단농업기술개발 인력을 육성하며 농과대학 졸업자등에 입학자격을 부여하고, 현재의 농업계 고등학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농고 또는 농대에 2년제 전문학교를 병설하거나 기존농고를 농업기술전문대로 승격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농업기술전문대를 도별로 1개씩 설치하거나 지역별로 특화하여 4~6개를 설립하고 농어민후계자로 선발되는 졸업생에게는 병역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중임(농림수산부).

: 한국 94. 3.10., 2면

○농업협동조합법관련 입법의견

- 농·축·수협외의 민주화는 중앙회장과 단위조합장의 직선제만으로는 안되고 농민 의사가 조합운영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로 위기에 처한 국내 농축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농·축·수협도 사업·조직·기능에 있어 연합조직체와 단위조합을 모두 특수화·전문화하며 품목별 생산조합의 육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개편해야 함(서기원 순천향대학교수, 『농업관련 협동조합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한 공청회).
- 개혁의 대상으로 ①단위조합의 합병, 중앙회규모축소 등 방만하게 비대해진 조직의 개편, ②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의 효율적인 분리운영, ③다른 생산자단체와의 통합등이며 특히, 농민들은 농협임직원들이 농민들의 애로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수익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다면서 조직의 대대적인 개편을 요구하고 있고 연구기관과 재야단체등에서는 농협의 경제사업과 인력도 독자적으로 채용해 전문화시켜야 한다고 주장. 1천4백4개의 단위조합을 통폐합해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단위조합규모를 늘려 단위조합의 경영을 전문경영인에게 맡길 경우 경영혁신과 협동사업이 활성화돼 경쟁력을 높일 수 있

을 것이며 중앙회를 조정 및 정책기능만을 가진 연합회체제로 바꾸어 중앙집권적이고 하향식인 획일체계를 지방분권적인 상향식 연합회체제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한국일보 해설).

- 농협으로 대표되는 생산자단체 조직개편의 최대 쟁점은 ①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의 분리, ②중앙회의 위상 재정립, ③단위조합의 규모화와 기능재편, ④중앙회장 및 단위조합장 선출방식, ⑤농수축협 통합 등임(국민일보 해설).
- 농협은 안정적인 신용사업으로 불안정한 경제사업을 보완한다는 논리로 신·경분리에 반대해왔으나 이는 농협의 신용사업이 정책금리 지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외면한 논리이므로 지적·금융시장개방 등으로 정책지원이 없어지면 농협의 신용사업도 안정성을 잃게 될 것임(김용택 연구위원, 농촌경제연구원).
- 농수축협의 개편방향과 관련하여 현행체제에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각각 전문화하는 방안, 신용사업부문을 독립채산제의 책임경영체로 육성하는 방안, 농수축협의 신용사업부서를 통합해 협동조합은행을 설립하는 방안 등이 있음(농촌경제연구원).
- 신용사업을 확대함에 따라 오히려 농민들에 대한 자금지원이 원활해지고 지난해의 경우 2백33억원에 달했던 경제사업의 적자부분을 신용사업의 흑자(3백63억원)에서 보전해 주었다며 신용사업을 분리할 경우 경제사업이 지금보다도 잘 추진되지 못할것임(농협).
- ①농·수·축·임협 중앙회를 통합하여 단일한 중앙연합회를 결성함으로써 농림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고, ②단위조합의 상호금융을 강화하는 한편, 중앙회의 신용사업은 분리하여 농림수산중앙금고를 신설·이관하며, ③정부의 역할을 '지원과 육성'으로 한정하여 민간조직으로서의 자율성을 높이고, ④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한 조직 및 운영의 개혁은 인적청산과 병행되어야만 함(이우재 한국농어촌사회 연구소장).
- 신용사업의 단계적인 분리방식 등 신중한 대안선택이 필요함(이상무 농림수산부 농정국장).
- 농·수·축협중앙회를 「협동조합 총연합회」나 「농·수·축산협동조합 중앙연합회」로 통합해야 함(농민단체).
- 지금과 같은 종합 협동조합으로는 국제화에 대비할 수 없으므로 경제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을 분리해 전문화해야 하며 구매나 판매 등의 경제적 기능은 현 조

- 직체제로 하되 농정운동등의 사회적 기능만 전담하는 '전국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을 요함(학계).
- 신용사업에서 벌어들인 이익금을 경제사업으로 돌려 농민의 소득증대에 쓰도록 하며 중앙회장의 직선제는 현행대로 두어야 함(농림수산부).
 - 현재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읍·면의 단위농협을 인근 지역의 실정에 맞게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함(최상길 경북 경산군 경산농협장).
 - 어민을 위한 수협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신용업무와 공제사업·경제사업 등 3가지 부문으로 업무를 분할, 독립하는 것이 바람직함(신숙문 수산업협동조합 부산부지회장).
 - 축협이 당초 설립목적과는 달리 양축농가에 대한 기술지도 및 정보제공보다는 금융자산 운용에 매달리고 있는 현재의 구조로는 제구실을 할 수 없으므로 금융파트를 맡고있는 직원보다 축산지도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우대받는 인사제도 개편이 뒤따라야 할 것이고 단위조합의 독자적인 사업추진의 실패로 생긴 손해액을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함(배수연 축협 전남도지회장).
 - 농협의 개편방향으로 ①우리농업·농촌·농민이 처한 위기상황 인식속에서 미래 발전지향적인 방향에서 개편하되 농민들의 의식·가치관·협동생활을 바탕으로 자율적이며 민주적인 협동운동을 전개하며 발전시키고, ②우리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경영 혁신체로 개편하며 이를 위해 종합농협체제를 품목별·지역별 전문농협체제로 개편해야 하며, ③중앙회와 시·도지부의 조직과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시·군 및 농협이 경제권역 중심으로 조직과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며, ④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농협조직으로 개편하여 지방으로부터의 협동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여 지역농민의 실리를 증진하여야 함(이찬현 서울대농대교수).
 - 농수축협의 신용사업을 가칭 「농업은행」에 통합해야 하고, 단위조합은 지역별 전문협동조합 업무를 수행하며, 중앙회의 상부단위로 협동조합중앙연합회를 신설, 농민의사를 대변하는 농정활동을 수행케 해야 함(심영근 서울대교수, 김영철 건국대교수 『농업금융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 신용사업은 농수축협이 전액출자한 자회사형태로 독립돼야 함(설광언 KDI연구위원).

- 단위조합의 감독권은 물론 경영의 중추인 단협 전무나 상무의 인사권까지 갖고 있어 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사회는 철저히 주인인 조합장만으로 구성하고 중앙회장은 이사회에서 뽑아야 함(서중일 식품개발연구원장).
 - 대통령직속기관인 농업발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 정부가 지도·감독권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①중앙회와 회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②중앙회중심의 협동조합을 단위조합, 품목별 조합중심체제로 개편하며, ③단위조합장도 의결기관의 장으로서 역할만 하도록 하고 경영은 전문인에게 맡기도록 하고, ④회장직선제 선출방식도 보완하며, ⑤일선조합원, 학계, 재야농민단체 등이 일제히 제기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를 적극 추진함(농림수산부).
- : 한겨레 94. 3. 5., 7면; 한국 94. 3. 7., 2면; 국민 94. 3. 7., 7면; 한국 94. 3. 8., 2면; 한겨레 94. 3. 8., 1면; 서울 94. 3. 8., 4면; 한겨레 94. 3. 9., 3면; 경향 94. 3. 8., 7면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의견

-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3개 지역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이나 폐수를 대량으로 발생시키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농지전용허가가 없어야 하는데, 농촌에 2~3차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함. 전용가능한 시설만 열거한 현행 포지티브방식(원칙금지, 예외허용)이 전용이 불가능한 시설만 나열하는 네거티브방식(원칙허용, 예외금지)으로 바꾸고, 농지전용이 안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시설은 금속제품·산업용화학제품·화학제품·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의 제조 및 가공시설과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시설이고, 역시 전용이 안되는 폐수배출시설은 산업용 화학제품·화학제품·제1차 금속의 제조시설과 가공금속제품, 도금시설 및 표면처리시설·석유정제시설·가죽 및 모피제품제조시설·섬유염색시설·종이제조시설·특정유해물질배출시설 등임(농림수산부).
- : 서울 94. 2. 15., 9면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의견

- 농지에 대한 시장·군수의 전용허가권한을 공장설치는 현행 4백50평에서 3천평, 농어업용시설은 1천평에서 2천평으로 각각 확대하고,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매매할 수 있는 임야의 면적을 현재 7백평에서 3천평으로 확대하

며, 도시인들도 영농의사가 뚜렷하면 농지소재지에 6개월이상 거주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하고, 농지개량을 위한 일시전용허가권한을 시장·군수로부터 읍·면장에게 위임하고 허가시기도 농한기에서 연중 필요시로 확대키로 함(농림수산부).

- 영농의 대규모화와 도시자본의 영농참여를 위해 '농업법인제도'를 도입, 법인의 농지소유를 허용하는 한편 거주지로부터 20km이내의 농지만을 소유토록 한 '영농통작거리 제한'도 폐지키로 함(행정쇄신위원회).

: 세계 94. 3. 6.,7면; 세계 94. 4. 2.,2면

◎建設

○건설기본법(가칭) 제정의견

- 건설회사의 인허가 관리비용을 대폭 줄여 부실시공을 막고 건설업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20여개 법률로 분산된 건설업관련법을 「건설기본법(가칭)」으로 통합하고 시공자격, 도급 및 하도급 규정, 부실공사시 처벌규정 등을 일원화 함(건설부).

: 동아 94. 3.21.,2면

○골재채취법 개정의견

-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광업권이 설정되나 광물채굴이 경제적 가치기준에 미달하는데도 불구하고 등록된 광물과 건설용골재 채취시에도 광업권자 또는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건설용 골재수급을 원활히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개정되어야 함.

: 법제처 입법의견신고센터에 접수된 입법의견.

○공동주택관리령 개정안

- ①공동주택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하자보수기간을 새로 규정해 기둥과 내벽력은 10년, 보·바닥·지붕은 5년 동안 시공업체가 보수책임을 지도록 하고, ②분양면적에 따라 부담하도록 돼 있는 아파트관리비 부담액 산정방식에 사용자 부담원칙을 적용해 쓰지 않는 시설에 대한 관리비는 부담을 지우지 않기로

하며, ③상가 등 복리시설의 용도를 바꿀 경우 그 동안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은 뒤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던 것을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意的 없이 신고로만 가능하도록 하고, ④시장·군수가 연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며, ⑤주택관리업체가 다른 시·도에서 영업을 할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던 것을 폐지하고 지역제한없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함(건설부).

: 동아 94. 4. 1., 11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6호(89면) 참조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

- 전국 3백68개 상수원보호구역(면적 1천1백 50km²)에 사는 주민에게 지금까지는 대지에 한해 주택과 부속건물의 신·증축을 각각 1백17m²와 33m²까지 허용했던 것을 앞으로는 지목에 관계없이 1백54m²와 66m²까지 확대하고 일절 설치가 불가능했던 종교시설(3백m²이하·기도원제외), 관리용 건축물(경작면적의 1%이하로 66m²까지), 온실(가구당 5백m²이하)등의 설치가 가능하고 생산물 저장창고도 경작면적의 0.5%(감귤은 1%)범위내에서 건축이 가능하며 댐건설로 수몰·철거되는 주민들도 상수원보호구역에 건축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영농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도 건축을 허용함(환경처).

: 한국 94. 4. 7., 29면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의견

- 팔당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해서라면 기존의 팔당특별대책지역만으로도 충분하므로 특별대책지역이 아닌 가평군 북·하면, 양평군 단월·양동·청운면, 이천군 장호원·호법·울면, 안성군 일죽면등 9개면 8백35km²를 자연보전권역에서 제외해 공장설립 및 건물 신·증축이 가능한 성장관리권역으로 편입시켜야 함(민자당).
- 자연보전권역을 축소하는 것은 건설부의 당초 입법예고안에도 포함돼있지 않은데다 공장설립을 촉진시켜 한강수계의 오염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음(박윤훈 환경처장관).
- 서울지역내 대형건물에 부과하는 과밀부담금의 기초공제 면적기준을 5천m²

기준안보다 다소 상향조정, 7천~8천^m²까지 공제혜택을 받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고 현재 30%로 되어있는 도심재개발건축물의 부담금 감면비율도 최소 50%이상으로 늘리기로 하며, 수도권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허가면적의 총허용량을 설정하는 제도인 총량규제 대상에서 도시형공장, 비공해형 첨단산업을 제외시켜 달라는 서울시의 요구를 긍정검토키로 함(당정회의).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0호(96면) · 제12호(99면) · 제94-1호(74~75면) 참조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의견

- 재건축아파트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 「주택건설촉진법」과 「소득세법」의 관련규정이 재개발아파트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있는 「도시재개발법」과 형평이 맞지 않으며, 재건축아파트 터도 재개발아파트와 같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환지'로 적용받도록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임(정부).

: 한겨레 94. 2.16., 7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4호(36면) · 제12호(100면) 참조

○지하수법 개정의견

- 생수값의 일정비율을 음용부담금으로 징수, 수돗물 수질개선에 힘쓰도록 생수 판매가격의 20~30%가량을 시판허가권자인 시·도지사가 받아 정수장 인력 및 장비확충, 정수처리등에 전액 사용토록 할 방침이고 현행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개발이 신고제로 돼 생수시판허용시 오·남용사태가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지하수영향 평가제」를 도입하며 생수시판에 따른 보완 조치로 약수터와 광천음료수 등 국민들이 마시는 물의 위생상태등을 종합관리·규제하는 법을 신설키로 함(보건사회부).

- 생수시판의 허용을 위해서는 시판생수의 질을 엄격히 관리해야 하는데, 생수를 「식품위생법시행령」에서는 광천수로 규정하고, 광천음료수 제조업이란 '지하 암반층 이하의 원수를 취수하여 정수처리등을 통하여 음용에 적합하게 제조하는 영업' 이라고 하고만 있어 생수시판 허용전에 명확한 위생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한 지하수 고갈이나 자연환경의 파괴가 없어야 함. 생수시판을 허용할 경우 지하수개발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세계일보 해설).

: 경향 94. 3.10.,23면; 세계 94. 3.10.,3면

◎科學技術·交通·遞信

○관광진흥법 개정안

- ①현재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특례법」에 따라 경찰청장이 갖고 있는 카지노 인허가권을 교통부장관이 가지며 수익금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관광진흥기금으로 내도록 규정하고, ②카지노를 1등급 이상의 관광호텔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 현행규정을 고쳐 국제공항과 국제여객선 터미널이 있는 시·도의 특 1등급 이상의 관광호텔중 외래관광객유치 및 외화획득실적이 많은 호텔과 1만 톤급 이상의 여객선에 카지노업을 허가하며, 정수제 개념을 도입해 일정 수까지만 허용하고, ③카지노업을 전용관광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현재의 허가갱신제도를 폐지, 허가의 유효기간을 두지 않기로 함(교통부).

: 한겨레 94. 3.15.,19면; 경향 94. 3.18.,23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호(105~106면) 참조

○통신기밀보호법시행령(가칭) 제정의견

- 「통신기밀보호법(가칭)」의 제정에 따라 수사·정보기관에 대해 국가안보나 수사상 필요할 경우 통신의 감청을 일정범위 안에서 허용하도록 함(법무부).

: 한겨레 94. 3.23.,2면

◎環境·保健

○OGR관련 입법의견

- 국내 환경기준을 강화시켜 국제화에 대비해야 하며 10여종으로 분산되어 있는 환경관련법규를 통일시키고 행정규제도 완화해야함. 산업구조도 환경친화적으로 조정하고 외국의 첨단환경기업의 국내 투자를 자유화하며 환경기금을 조성하여 환경산업 및 환경기술등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해야 함(김광태 삼성지구환경연구소장).

: 서울 94. 2.23.,21면

- 중소배출업소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이유로 측정횟수를 축소하였으나 1993.7.31.인상된 고시가에 의해 1회 측정 수수료를 산정해 볼 때 대기, 수질 5종 업소 각 월 10,000원의 비용은 결코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없음. 즉 철저한 환경관리를 위해서는 4,5종 배출업소의 경우 최소한 월1회 이상의 측정이 필요함. 또 환경지도단속의 환경처로의 일원화가 필요하며 오염물질의 측정분석업무는 보호의 필요가 있음.

: 법제처 입법의견신고센터에 접수된 입법의견.

○구강보건법(가칭) 제정의견

- 공중 구강보건 사업을 통해 효과적인 질병예방과 국민의료비 상승의 억제, 구강보건 행정의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공중구강보건법(가칭)을 제정해야 함(한영철 치과원장).

: 한겨레 94. 3. 1.,10면

○노인복지법시행령 개정의견

- 양로원등 유료노인복지시설을 폐쇄하거나 일시적으로 문을 닫을 때에는 3개월 전에 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이에 대한 동의서, 향후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등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하고, 지역사회실정에 밝고 노인복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노인복지명예지도원'으로 위촉, 입소자들의 의견 수렴 및 시설운영에 대한 조사와 지도업무를 맡도록 함(보건사회부).

: 세계 94. 4.10.,2면

- 무의탁 노인이 몇 십만명이나 되는 현실에서 1,000만 근로자 한사람 당 매월 1,000원씩 사회복지세를 거두며 각종 고급영업장의 봉사료를 5%정도 더 거두며 사치업종의 과세강화로 복지기금을 조성하여 노인복지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함.

: 법제처 입법의견신고센터에 접수된 입법의견.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 개정안

- 국제공항 주변 항공기소음한도를 80WECPNL(항공기소음 측정단위)로 정해 김포·김해·제주 등 3개 국제공항 주변지역에 소음한도를 넘어서는 소음이

발생할 경우 공항측에 야간시간대 비행기 이·착륙 금지나 방음시설 설치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해 보상하도록 함(환경처).

: 한겨레 94. 4. 3., 2면

○식품위생법 개정의견

- ①건강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업자가 유통중인 불량 제품 전량을 회수, 폐기토록 하고 이를 언론매체에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리콜(Recall)제'를 도입하고, ②식품변질 등을 유통과정 중점관리로 예방하며 수입 식품에 관한 통관검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며, ③일정자격을 갖춘 민간인을 '위생관리사'로 선발,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 및 상담·지도요원으로 활용함(총리실).

: 세계 94. 2. 21., 2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7호(70~71면) 참조

○유전자은행설립에관한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범인 검거에 인력과 시간·비용의 낭비가 심한 현재의 수사체계로는 급증하는 범죄발생에 대처할 수 없으므로 '유전자은행제도'를 도입하되 유전자입력을 위해 임의로 채액을 채취할 경우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강력범에 한해 출소때 일정량의 혈액 및 타액을 제출토록 의무화함(대검찰청).

: 경향 94. 3. 5., 22면

○의료법시행령 개정의견

- 현행 의사고시제도가 합격자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하고 있으나 대부분 임상경험이 취약해 기초적인 일반진료조차 불가능, 의사자격시험으로는 미흡하다는 의료계의 지적에 따라 의대본과 4학년말에 치르는 의사국가시험을 본과 3학년말에 치르도록 하고, 의대 교육과정을 개편해 4학년은 임상실습기간으로 전문화하기로 함(보사부).

: 한국 94. 4. 4., 29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5호(63면) 참조

○장기매매관련 입법의견

- 자발적인 장기제공자가 극히 드문 우리현실에서 수요를 충족시켜 줄 대책이 없는 한 장기의 불법매매는 단속으로 근절되기 어려우므로 장기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현행법의 검토가 있어야 함(경향신문 해설).

: 경향 94. 2.24., 3면

◎法院·法務

○국가보안법 폐지의견

- 인권탄압과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으므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남북관계의 변화를 수용해 새로운 대체입법을 해야 함(민주당).
- 「국가보안법」의 개정문제는 검토해보겠지만 폐지는 반대함(민자당).
- 자유민주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므로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반대함(법무부).

: 동아 94. 3. 6., 5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57~58면) · 제6호(102면) 참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개정의견

- 개인명의로 신탁등기한 종중의 토지를 종중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경우에 그동안은 비과세되어 왔으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지방세인 등록세, 교육세 및 주택채권까지 매입토록 되어 사실상 2중으로 등기비가 소요되므로 과세조치의 시정이 필요함.

: 법제처 입법의견신고센터에 접수된 입법의견.

○사법제도개혁관련 입법의견

- 헌법에도 정부와 국회(의원)만이 입법을 제안할 수 있으나 사법부가 사법위의 이름을 빌려 지나친 이상론과 법원우월주의를 지향하고 있음. ①영장심사제의 경우 범인의 체포와 구인, 인도방법에 대한 해결없이 실사가 불가능하므로 체포장제도 또는 긴급구속제도의 확대가 요구되고, ②기소전보석제도는 구속적부심, 구속취소, 집행정지, 보석등 비슷한 제도가 많아 정리가 필요함(법무부·검찰).
- 특허소송의 2심제화는 사실상의 4심제여서 신속을 요구하는 기업의 속성과 안맞고 국가경쟁력 측면에서도 낭비임(변리사회).
- 사법개혁은 국민의 사법접근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이뤄져야 하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때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정치법관들을 헌법정책 결정자에게 배제해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시녀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하며, 행정·특허·국제문제 등 전문법관의 확보가 법조계의 시급한 과제이고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의 구성에 각 분야 전공교수들의 참여가 요망됨(강경근 숭실대교수).

- 법조인의 양적 확대가 힘들다면 법학 전공자 중 법률구조기관 등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뽑아 법률구조사건에 한해 변호사 대신 법정에 설 수 있도록 하는 법률구조사제도를 신설해야 함(양정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소장).
-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때 추천위원회제도를 두고 시민들이 법관인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함(한상호 법원행정처 조사국장).
- 사법시험제도로 파행을 면치 못하는 법과대학의 교육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사법시험의 응시자격을 학력·응시횟수·연령별로 제한하고 시험과목·출제방식을 전면 개선하며 사법연수원 교육도 실무교육 외에 가치판단을 심어주는 과목과 국제화 시대에 대비해 외국어도 포함시켜야 함(안정환 서울대교수).
- 대법원 개혁안 중 ①민·형사 지방법원의 구별폐지, ②대법원의 법률안 제출권 및 예산안 요구권, ③시·군법원 설치안, ④행정소송의 심급구조 개선안 등은 반드시 실시하고 영장실질심사제와 기소전 보석제도는 인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꼭 입법화되어야 함(정종섭 건국대교수).

: 경향 94. 2.18.,22면; 한겨레 94. 4. 2.,1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2호(107~110면)·제13호(100~103면)·제94-1호(83~85면) 참조

- 법원행정처가 지난 3월 국민을 위한 능률적인 재판제도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사법제도발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된 상고심사제를 제안하면서 위의 법안을 내놓았는데 이는 동위원회가 “사실심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전제”라는 단서를 붙여 남상고를 거를 수 있는 여과장치를 마련하도록 건의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사실심법원의 강화와 인적·물적 확충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며 국민과 입법자의 의사를 완전히 도외시한 채 대법원의 편의만을 고려한 것이라 보여지고 따라서 위의 법안은 앞으로 「법원

조직법」의 개정문제와 관련하여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 생각되며 이상과 같은 이유로 대한변협은 법원행정처가 제안한 위 법안을 전면적으로 반대함(이세중 대한변호사협회회장).

: 법제처 입법의견신고센터에 접수된 입법의견.

○사생활보호법(가칭) 제정의견

- 정보처리기능이 대규모화 되면서 자기보존의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개념은 '자기정보관리권', '자기정보지배권', '자기정보이용결정권'으로까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법적 견해가 성립되었고 이 개념의 입법화가 이미 여러나라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83년 유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사생활보호법(가칭)」 제정 권유 원칙들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 아직 「사생활보호법(가칭)」 차원에도 이르지 않고 컴퓨터범죄방지를 위한 「공공기관등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안」은 아직 전면실시 되지 않고 있고 「전산자료안전관리기준(가칭)」은 제정하자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가입자명단 같은 자료를 팔다가 적발되면 역설적으로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 입건을 하게 되므로 시급한 법적대응을 요함(서울신문 해설).
- 국가전산망의 이용가치가 높아지면서 국가정보가 유출돼 각종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정보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공무원들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컴퓨터시대에 걸맞는 법규정비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함(성백영 강력과장 서울지검).

: 서울 94. 4. 2., 3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가칭) 입법의견

- 대법원이 재판서비스를 확대하려는 노력은 도외시한 채 상고심사제도입이라는 편의주의적 방법을 택한 것에 대해 정부·국회에 변협의 입장을 전달하고 상고심사제를 반대하는 범국민서명운동을 해 나갈 것임(이세중 대한변협회장).
- 민사, 행정 및 가사소송 상고사건은 대법관들의 사전심리를 거쳐 30~40%에 대해서만 상고심을 허락하고 형사사건의 경우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제한없이 상고심을 허용하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가칭)」시안에 따라 대법원은 ① 원심판결의 헌법 위반, ② 원심판결의 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법률해석 위반, ③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될 경우, ④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⑤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⑥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거나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등 「민사소송법」 제394조(절대적 상고이유)에 해당할 경우는 반드시 상고를 허용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대법원).

: 한국 94. 3.31., 5면; 한겨레 94. 3.31., 2면

○인권관련 입법의견

- 국가보안법 개폐, 「정보공개법(가칭)」, 「고발자보호법(가칭)」 제정, 정치관계법 개정, 「행정절차법(가칭)」 제정, 공무원 노동3권 인정 입법, 사회복지입법, 환경보전 및 산업안전관련법률 개선 등이 인권을 위한 법제개혁의 과제임(홍준형 아주대학교수).
- 사회와 국민여론에 호소하는 일, 가해자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과 고발을 제기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일 등으로, 인권침해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입법운동을 벌이고 인권개선의 법적 도구로 재심제도, 공소시효, 특별검사제도, 국제법 등을 마련하여야 함(박원순 변호사).

: 한겨레 94. 2.22., 16면

○호적법 개정의견

- 호적을 기재하는 데 있어서 한글을 전용할 경우에 다의적인 용어의 경우에 의미 파악이 곤란하기 때문에 한자를 병행해야 함.
- : 법제처 입법의견신고센터에 접수된 입법의견.

○형사소송법 개정시안

- ‘해외도피 범법자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제도’의 도입은 위헌적 성격의 것으로 범죄인 인도협정 체결 국가 확대 등 다른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함(재야법조계).
-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으로 도망간 사람에게 공소시효정지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검찰청).
- 대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제 도입 추진과 ‘영장없는 보호실 유치는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현행 구속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 따라서 현

행 긴급구속제도의 요건을 완화, 장기 3년 이상의 죄를 저지르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만 있으면 체포할 수 있도록 함(검찰청).

- 긴급구속장제가 입법화 된다면 수사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으나 헌법상 법관을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사과정에 처음부터 참여시킴으로써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자는 사전영장주의의 대원칙에 어긋남. 영미법에 있어서는 체포직 후에 곧 피의자를 법관에게 데려가 법관에 의하여 범죄사실의 고지, 묵비권 행사 등의 권리에 관한 고지가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법관이 구속이유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예비신문)가 개시되므로 도입이 고려됨(동아일보 해설).
- 기소중지자의 경우 수배관서에서 신병을 인수하기까지 검거경찰서에서 신병을 보호할 수 있도록하여야 함(박종수 도봉경찰서 형사과장).

: 한겨레 94. 2.26., 15면; 조선 94. 3.17., 30면; 동아 94. 4. 3., 3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2호(110면) · 제13호(105~106면) · 제94-1호(85면) 참조

Ⅲ. 주요입법예고법률안

1. 주요입법예고법률안목록

(1994.2.11.~1994.4.10)

◎産業·經濟	117
○ 수출보험법개정법률안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科學技術·交通·遞信	118
○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안	
○ 해양과학조사법제정안	
◎環境·保健	119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	

2. 주요입법예고법률안내용

(1994.2.11.~1994.4.10)

◎産業·經濟

○ 수출보험법개정법률안

1. 개정취지

국제무역환경 및 업계의 보험수요 변화에 부응하여 수출보험을 보다 효율적,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수출보험 독립운영기관인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설립한('92.7)취지에 맞추어 자율적인영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수출 및 통상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가. 수출보험제도의 탄력적 운영근거 마련
- 나. 수출보험공사의 자율성 확대
- 다. 계약체결한도제 개선
- 라. 포괄보험 운영방식의 다양화
- 마. 중소기업 우대근거 신설
- 바. 공사의 업무범위 확대
- 사. 기타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1. 개정취지

정부가 신경제5개년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신산업분야 등에까지 법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기타 법 운용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법적용대상 거래범위를 합리화
- 나.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및 수급사업자 보호 강화
- 다. 기타 법률시행상의 미비점 보완

◎科學技術·交通·遞信

○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안

1. 개정이유

카지노업이 관광의화획득뿐만 아니라 외국인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카지노업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에서 외국인 관광객전용 관광사업으로 전환·육성하기 위하여 카지노업에 관한 사항을 관광진흥법에 규정하고 현행 카지노업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카지노업을 관광의화획득을 위한 관광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카지노업을 관광사업에 포함시킴.
- 나. 카지노업의 허가권자를 교통부장관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카지노업소의 적절한 수급을 도모함.
- 다. 카지노사업자의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카지노시설의 변조행위 금지, 돈의흐름에 관한 기록유지의무등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해외교포의 카지노영업소 출입을 허용하여 외화획득증대를 도모함.
- 라. 카지노 수입금의 일부를 관광진흥개발기금에 출연토록 하여 관광지개발등 관광객수용시설 확충에 활용함.
- 마. 카지노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카지노시설의 변조등 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불법및 변태경영을 방지함.

○ 해양과학조사법제정안

1. 제정취지

- 1994년11월16일 발효하는 유엔해양법 협약에 규정된 해양과학조사제도에 의하여 외국 또는 권한있는 국제조직이 우리나라 관할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하려는 경우 이를 허가하고 규율할 수 있는 국내법 절차를 정하고
- 국내 연구기관, 대학 및 정부기관 등이 국가예산으로 수행하여 획득한 해양

과학조사자료를 수집하여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을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 가. 대한민국 관할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등은 조사실시 예정일 6월전까지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도록 함.
- 나. 해양과학조사를 하는 외국인등에게 대한민국전문가의 참여보장 및 보수등 비용부담, 확보된 조사자료의 제출의무 등을 부과함.
- 다. 외국인등이 허가받은 조사계획과 상이한 조사를 허가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양과학조사를 정지 또는 중지할 수 있게 함.
- 라. 외국인등이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대한민국의 인적·물적 재산에 피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배상하도록 함.
- 바. 외국인등이 해양과학조사에 의해 획득한 조사자료를 근거로 천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대한 기득권을 주장할 수 없게 함.
- 사. 국가기관등은 해양과학조사를 포함하여 수행하는 사업의 조사계획을 사업 확정후 1월이내에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게 함.
- 아. 해양과학조사사업을 수행한 국기관등의 장, 법인의 장 및 사업책임자는 조사보고서와 조사자료를 정해진 기한내에 관리기관에 제출하게 함.
- 자. 과학기술처장관은 해양과학조사자료의 수집, 관리 및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할 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함.
- 차. 해양과학조사자료의 제출의무를 6월이상 게을리한 경우 사업을 수행할 국가기관등의 장, 법인의 장 또는 사업책임자에게 3년이내의 기간동안 동일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게 함.
- 카. 해양과학조사자료의 제출의무를 위 차항의 제한기간 경과후에도 이행하지 않는 사업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

◎環境·保健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

1. 개정이유

청소년범죄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부탄가스 흡입자등에 대한 처벌근

거를 마련하고, 유독물영업자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유독물 및 특정유독물의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법률적용 제외대상으로 식품·사료·화약류등을 새로이 추가함.

나. 유독물영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이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징수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함.

다. 시험연구용시약으로 사용하는 특정유독물은 사용허가 신청대상에서 제외함.

라. 청소년범죄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부탄가스 흡입자등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벌칙중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형벌에서 과태료로 완화하는등 일부 벌칙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

Ⅳ. 최신법령 목록

(1994. 2.11. ~ 1994.4.10)

공 포 번 호	진 명	공포연월일		
법 률	4738	근로자의날제정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	1994. 3. 9	
	4739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1994. 3.16	
	4740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	1994. 3.16	
	4741	지방자치법 중 개정 법률	1994. 3.16	
	4742	여권법 중 개정 법률	1994. 3.24	
	4743	농어촌특별세법	1994. 3.24	
	4744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 법률	1994. 3.24	
	4745	공중인법 중 개정 법률	1994. 3.24	
	4746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1994. 3.24	
	4747	수의사법 중 개정 법률	1994. 3.24	
	4748	사방사업법 개정 법률	1994. 3.24	
	4749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	1994. 3.24	
	4750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	1994. 3.24	
	4751	수산물검사법 중 개정 법률	1994. 3.24	
	475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1994. 3.24	
	4753	석유산업법 중 개정 법률	1994. 3.24	
	4754	석탄산업법 중 개정 법률	1994. 3.24	
	4755	광업법 중 개정 법률	1994. 3.24	
	4756	한국석유개발공사법 중 개정 법률	1994. 3.24	
	4757	발명진흥법	1994. 3.24	
	4758	한국한의학연구소법	1994. 3.24	
	4759	대한민국 제향군인회법 중 개정 법률	1994. 3.24	
	조 약	1213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연합기본협약	1994. 3.15
		1214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약	1994. 3.18
	대 통 령 령	14161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개정령	1994. 2.14
		14162	전쟁기념사업회법 시행령 중 개정령	1994. 2.14
		14163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	1994. 2.15
		14164	교통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	1994. 2.15

공 포 번 호	건 명	공포연월일
14165	국민영양개선령중개정령	1994. 2.16
14166	국제화추진위원회규정	1994. 2.16
14167	교육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1994. 2.17
14168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 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1994. 2.18
14169	법인세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2.18
14170	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2.18
14171	동계국제종합경기대회지원위원회규정	1994. 2.19
14172	국무회의규정중개정령	1994. 2.19
14173	차관회의규정중개정령	1994. 2.19
14174	새마을금고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2.21
14175	경제기획원직제중개정령	1994. 2.21
14176	공정거래위원회직제중개정령	1994. 2.21
14177	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4. 2.21
14178	외자도입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2.28
14179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	1994. 2.28
14180	서울대학교설치령중개정령	1994. 2.28
14181	지방자치단체의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중 개정령	1994. 2.28
14182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중개정령	1994. 2.28
14183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	1994. 3. 2
14184	산림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3. 2
14185	광복50주년기념사업위원회규정	1994. 3. 5
14186	정보조정협의회규정폐지령	1994. 3. 5
14187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1994. 3. 9
14188	한국토지개발공사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3.12
14189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3.12
14190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4. 3.14
14191	무역위원회직제중개정령	1994. 3.14
14192	소방기관설치및정원에관한규정중개정령	1994. 3.16
14193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 규정중개정령	1994. 3.16
14194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1994. 3.23
14195	교육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3.23
14196	해의이주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3.25

공 포 번 호	건 명	공포연월일
14197	협동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	1994. 3.29
14198	한국자원재생공사법시행령	1994. 3.29
14199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4. 4
14200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1994. 4. 7
14201	공공자금관리기금법시행령	1994. 4. 9
14202	단기금융업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4. 9
14203	신용카드업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4. 9
14204	군인사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4. 9
14205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1994. 4. 9
14206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4. 9
14207	하수도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4. 9
14208	농어촌전화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4. 9
총 리 령 449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3.21
450	관보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4. 7
451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규칙	1994. 4. 7
외 무 부 령 173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중개정령	1994. 2.26
내 무 부 령 610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1994. 2.19
611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2.22
612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3.11
614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중개정령	1994. 4. 8
재 무 부 령 1962	상속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2.17
1963	상품권법시행규칙개정령	1994. 2.28
1964	국세징수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3. 5
1965	조세감면규제법제83조의규정에의한관세 경감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4. 3. 5 1994. 3. 5
1966	외자도입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3. 2
1967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3.14
1968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3.12
1969	세무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3.25
법 무 부 령 383	재소자주·부식급여규칙중개정령	1994. 2.26
국 방 부 령 443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	1994. 2.28
444	방위산업에관한착수금및중도금지급규칙	1994. 3.18
445	군인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4. 9
교 육 부 령 643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인사사무처리규칙중개정령	1994. 2.16

공 포 번 호	건 명	공포연월일
644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 규칙중개정령	1994. 2.16
645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 교류규칙	1994. 2.25
646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중개정령	1994. 3. 8
문화체육부령 11	우량도서선정규정폐지령	1994. 4. 9
농림수산부령 1132	양곡증권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2.25
1133	주요농작물종자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3.25
상공자원부령 30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3. 9
31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3. 9
32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 규칙중개정령	1994. 3. 9
33	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상공자원부소관	1994. 3.17
34	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1994. 3.25
건설부령 547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 규칙중개정령	1994. 2.17
548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4. 3.16
549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3.22
550	중기관리법시행규칙개정령	1994. 3.24
551	부동산중개업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4. 1
보건사회부령 924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2.18
925	국민영양개선령시행규칙중개정령영양사에 관한규칙중개정령	1994. 2.18
926	국민영양개선령시행규칙중개정령영양사에 관한규칙중개정령	1994. 2.18
927	국립보건안전연구원약품·식품등의안전성· 유효성수탁시험·연구규칙폐지령	1994. 3.11
노동부령 89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3.29
90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4. 3.29
91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4. 3.29
교통부령 1023	삭도·궤도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2.28
1024	재단법인홍익회감독규정폐지령	1994. 2.14
1020	공항시설관리규칙중개정령	1994. 3. 8
체신부령 869	체신부협업관서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 관한규칙중개정령	1994. 2.24

국내입법의견조사 94-2 인공수정의 법적규율

1994년 5월 26일 印刷

1994년 5월 31일 發行

發行人 張 明 根

發行處 **한국법제연구원**

印刷處 (주) 한국컴퓨터산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1-103

전화 : (722)2901~3, 0163~5

등록번호 : 1981. 8. 11 제1-190호

本院의 承認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값2,500원

